



충청남도 건축물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
DESIGN GUIDELINE

Contents

1. 가이드라인 개요

1.1 배경 및 목적	3
1.2 방법 및 내용	3
1.3 가이드라인 프로세스	5

2. 충청남도 건축물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

2.1 건축물 색채 기본방향	9
1) 프로세스	9
2) 기본방향	9
3) 추진전략	10
4) 기초색 추출	11
5) 권역별 컨셉 및 기본방향	12
2.2 권역별 대표색채	14
1) 북부권역(당진, 아산, 천안)	14
2) 서해안권역(보령, 서산, 서천, 태안)	15
3) 중부권역(예산, 청양, 홍성)	16
4) 백제유교문화 권역(공주, 부여, 논산)	17
5) 남부권역(계룡, 금산)	18
2.3 건축물 용도별 색채 가이드라인	19
1) 단독주택	19
2) 공동주택	21
3) 상업 및 업무건축물	25
4) 공공건축물	27
5) 산업 및 기타건축물	29
2.4 건축물 소재색 가이드라인	31
1) 건축물 유형별 소재 가이드라인	31
2) 건축재료 권장색채	35
2.5 건축물 색채 적용 예시	37

3. 가이드라인 적용 및 운용방안

3.1 색채 가이드라인 활용매뉴얼	41
1) 개요	41
2) 방향	43
3) 매뉴얼	45
4) 활용사례	53
5) 협의프로세스	55

3.2 색채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56
1) 체크리스트(공통)	56
2) 체크리스트(관리자용)	57
3) 체크리스트(사용자용)	58
3.3 충청남도 건축물 컬러칩	59

부록

■ 충청남도 건축물 색채 가이드라인 대상 용도 분류	65
■ 참고자료	71

1. 가이드라인 개요

1.1 배경 및 목적

1.2 방법 및 내용

1.3 가이드라인 프로세스

1. 가이드라인 개요

1.1 배경 및 목적

- 현재 충청남도는 색채와 관련된 광역차원의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해 건축물 색채의 실질적인 적용과 관리가 어려우며 무질서한 색채 환경을 형성하고 있음
- 색채는 지역의 환경적 색채, 그리고 지역 주민에 의해 만들어지고 변화 및 보존되어온 인공적인 색채가 공존하여 나타나는 것으로서,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
- 본 가이드라인은 색채 환경을 형성하는 중요요소인 건축물에 착안하여, 색채 가이드라인의 실질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본 가이드라인은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유도적 차원에서 고려하여야 할 방향을 제시해줌으로써, 충청남도의 통합된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1.2 방법 및 내용

- 본 연구에서는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5개의 권역으로 분류하여 권역 대표색을 추출하도록 함
 - 북부권역 천안, 아산, 당진 ◦ 서해안권역 서산, 태안, 보령, 서천
 - 중부권역 예산, 청양, 홍성 ◦ 백제유교문화권역 공주, 부여, 논산
 - 남부권역 금산, 계룡
- 건축물 용도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5개의 권역에 대한 색채 가이드라인 개발과 운용 방안을 제시함
 -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구분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름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비도시지역 :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의 용도별 건축물 구분에 따라 5가지로 분류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 및 업무 건축물(근린), 공공건축물, 산업 및 기타 건축물
- 본 가이드라인은 본문과 활용 매뉴얼로 구성하여 상황에 맞게 색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함
 - 본문에서는 현황분석 및 상위계획, 시·군 색채 계획을 반영하여 지역과 권역의 특성에 맞게 적용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활용 매뉴얼에서는 지역 및 권역의 구분없이 본문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포괄하여 건축물 용도별로 최소한 준수해야 할 색채범위를 제시함

표1 건축물 색채 가이드라인 대상 구분

구분	내 용
단독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다중주택, 공간,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상업 및 업무 건축물(근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업무시설
공공건축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산업 및 기타 건축물	공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묘지 관련 시설

※ 용도의 자세한 구분은 부록 참조

표 2 내용적 범위

충청남도 건축물 색채 가이드라인 수립	- 충청남도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건축물 색채 가이드라인 개발
색채 현황 및 건축물 색채 분석	- 충청남도내 경관관련계획 분석(상위계획, 각 지자체 계획) - 현황조사 및 분석(자연환경, 인공환경)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설정	- 기존 관련계획 및 현황분석에 따른 색채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설정
건축물 유형별 색채 세부지침	- 건축물 용도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권역별 대표색을 반영하여 색채지침 제시 - 건축물 용도별 색채 배색방법 및 시뮬레이션 제시
건축물 유형별 색채 가이드라인 적용 방안 제시	-가이드라인 활용 매뉴얼 및 컬러칩 제작 -체크리스트(공통), 주체별(관리자용, 민간인용) 2종 별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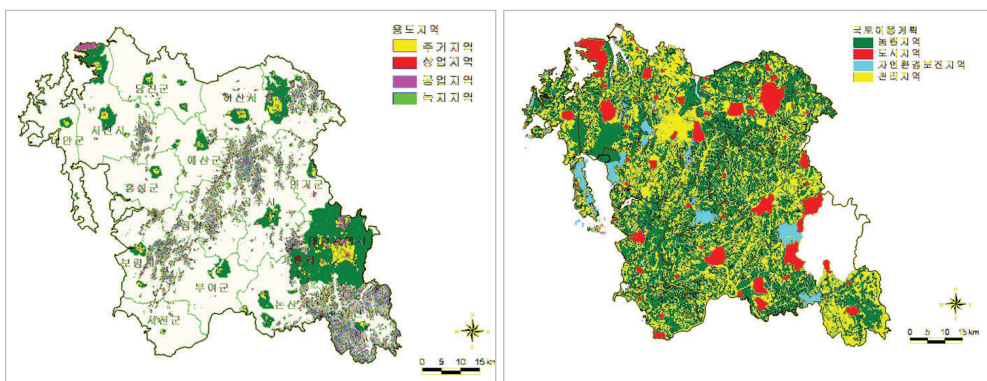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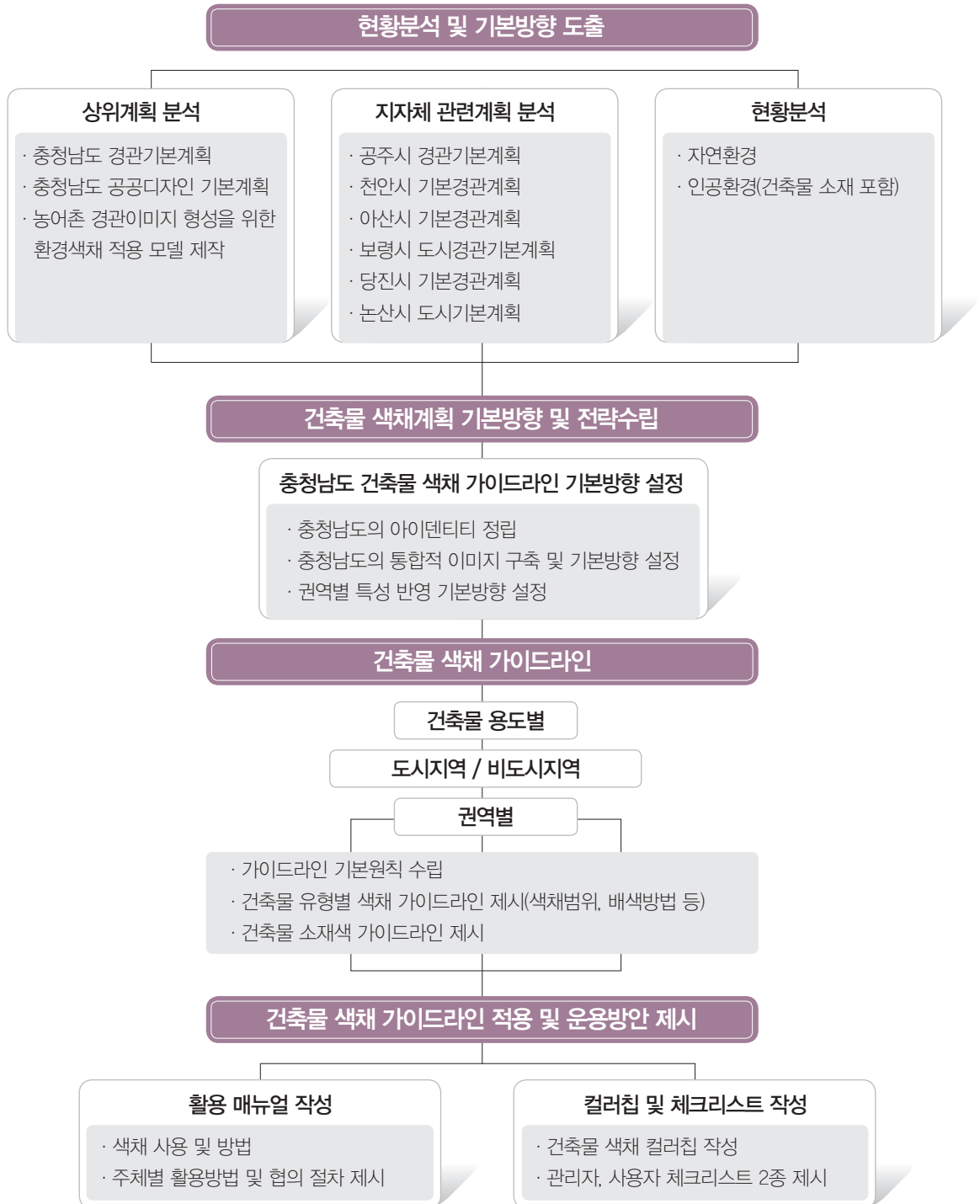


그림 1 충청남도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용도지역¹⁾

1.3 가이드라인 프로세스



2. 충청남도 건축물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

2.1 건축물 색채 기본방향

2.2 권역별 대표색채

2.3 건축물 용도별 색채 가이드라인

2.4 건축물 소재색 가이드라인

2.5 건축물 색채 적용 예시

2. 충청남도 건축물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

2.1 건축물 색채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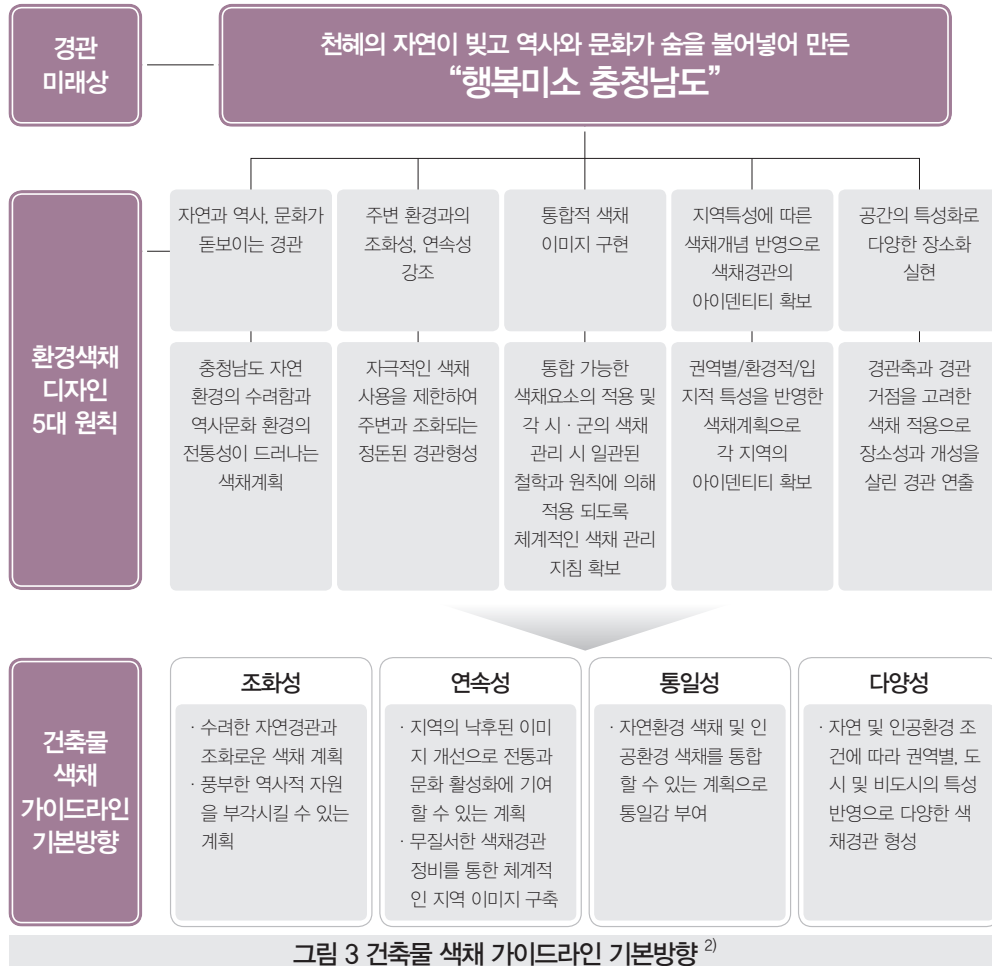
1) 프로세스

- 자연 및 인공환경 조사 분석결과를 통해 충청남도의 색채 팔레트를 도출하고, 충청남도의 통일감 있는 이미지 형성과 통합된 디자인 구현을 위한 기본방향을 도출함
- 권역별 특징을 반영한 색채 팔레트를 도출하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대한 건축물 용도별 활용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충청남도 색채 팔레트	권역별 차별화 전략 수립	배색디자인
• 현황조사 분석 • 기본방향 설정 • 기초색 설정	• 권역별 특징 정리 – 관련계획 분석 – 현황조사 및 문헌 분석 • 권역별 이미지 방향 설정 • 권역별 색채 팔레트 도출	• 건축물 용도별 색채 디자인 전략 • 용도별 배색 방법
그림 2 색채 가이드라인 프로세스		

2) 기본방향

- 본 연구에서는 상위계획인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에서의 미래상과 환경색채 디자인 원칙에 입각하여, 각 권역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별 적용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색채 가이드라인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음
- 조화성, 연속성, 통일성, 다양성의 4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충청남도다움”과 “지역다움”을 살린 차별화 된 이미지 설정 및 색채 가이드라인을 수립함으로써, 디자인 통합에 의한 충청남도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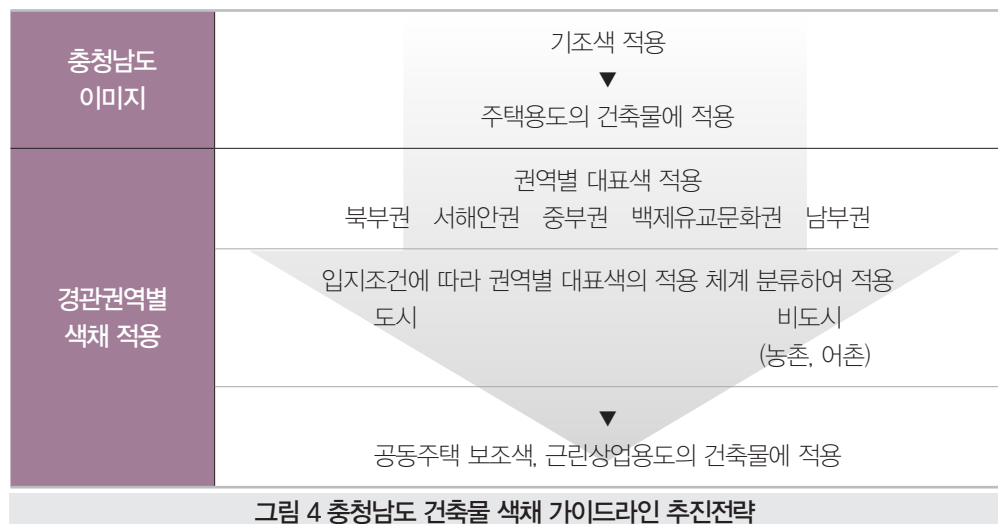


3) 추진전략

- 본 연구에서는 색채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3단계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음
 - 1단계는 주요 건축물인 주택용도의 주조색에 기초색을 적용하도록 하여, 충청남도의 통일된 이미지 조성 및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함
 - 2단계는 5개의 권역별 색채 이미지에 맞는 색채 팔레트를 도출하여 공동주택의 보조색 및 강조색, 근린 상업건축물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권역별 특성을 부각시키고 충청남도 전체의 변화감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함
 - 3단계는 공공용도의 건축물에 권역별 색채를 강조색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권역별 개성을 부여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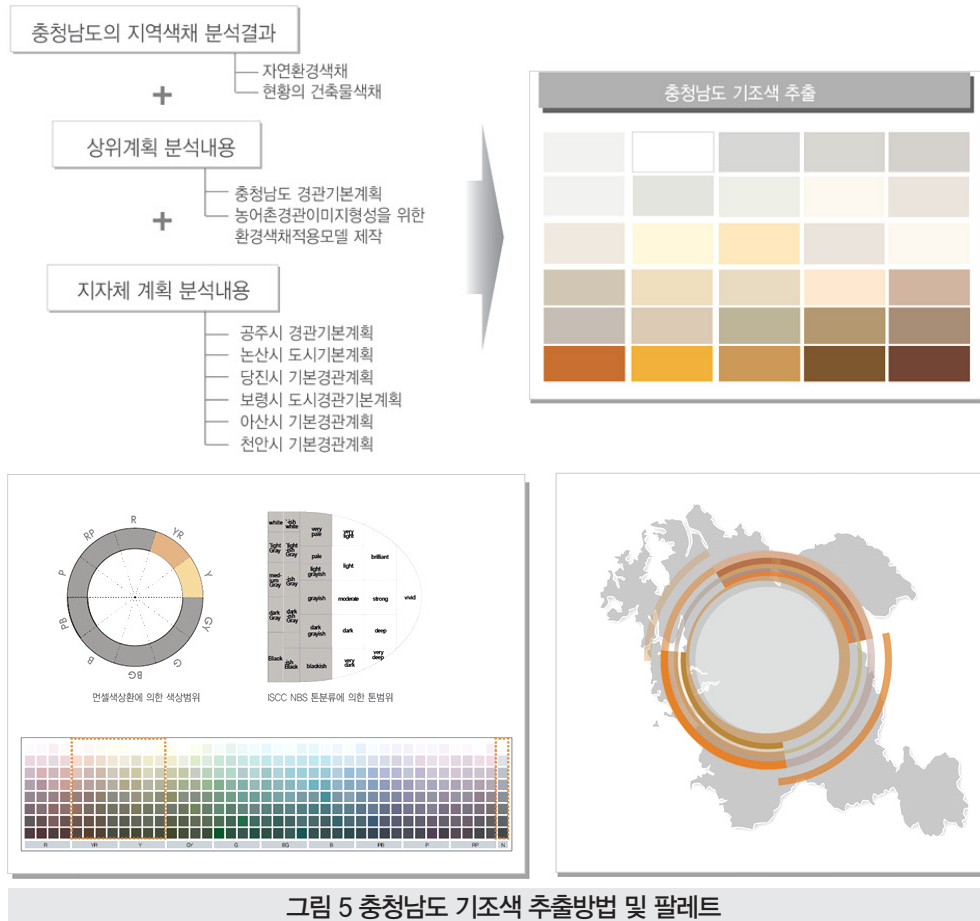


건축물 용도기준에 따라 적용
단독주택/공동주택/상업 및 업무건축물/공공건축물/산업 및 기타 건축물



4) 기조색 추출

- 충청남도의 통일감 있는 색채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①자연환경 색채 및 인공환경 색채 분석, ②충청남도 색채 관련 상위계획 및 각 지자체 계획 분석을 통하여 기조색을 추출하였음
- 기조색 범위는 YR, Y계열의 명도 6이상/채도4이하, N계열의 범위이며, 추출된 기조색은 주택용도 건축물의 주조색으로 활용하여, 충청남도의 통일감 있고 조화로운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함
- 또한 기조색의 범위를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각 권역별 특성에 맞는 이미지를 지향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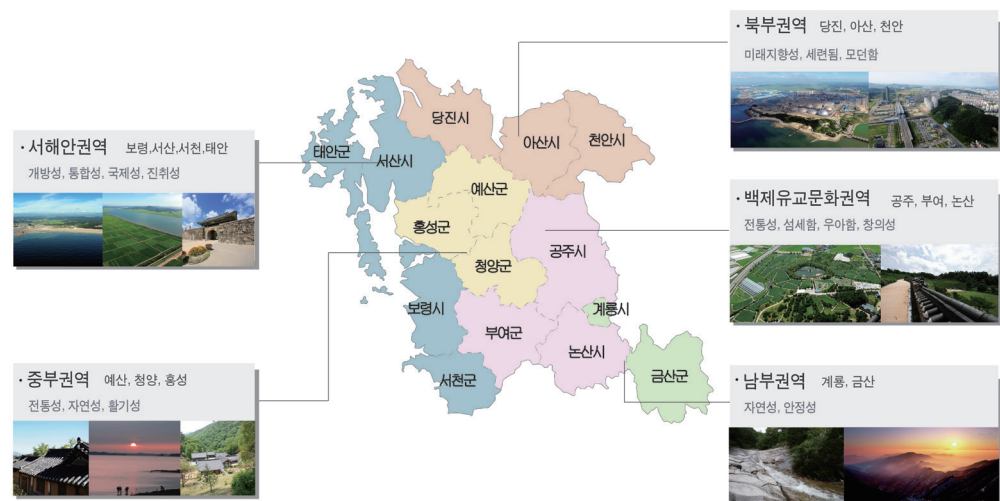


5) 권역별 컨셉 및 기본방향

- 상위계획인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각 지자체의 관련계획, 현장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권역별 특징에 맞는 지향 이미지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색채 팔레트를 도출함
 - **북부권역** 첨단산업지역으로 '미래지향성', '세련됨', '모던함'의 이미지
 - **서해안권역** 내포문화지역으로 '개방성', '통합성', '국제성', '진취성'의 이미지
 - **중부권역** 칠갑산 문화 및 신도시 활성화 지역으로 '전통성', '자연성', '활기성'의 이미지
 - **백제유교문화권역** 백제유교 문화지역으로 '전통성', '섬세함', '우아함', '창의성'을 지향하는 이미지
 - **남부권역** 금강·계룡산 문화지역으로 '자연성', '안정성'을 지향하는 이미지

표 3 권역별 특징 및 이미지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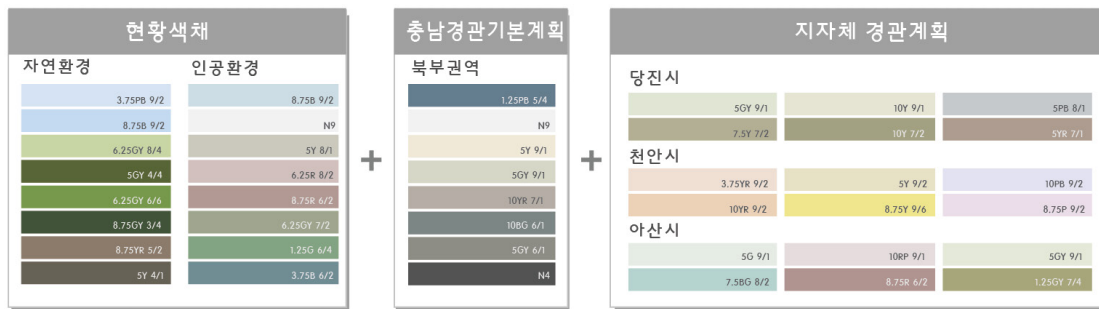
구분	특징	이미지 방향
북부권역 (천안, 아산, 당진)	산업단지 및 시가지 경관 활성화	미래지향성, 세련됨, 모던함
서해안권역 (서산, 태안, 보령, 서천)	리아스식 해안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수변경관과 내포문화의 신시가지 형성 권역	개방성, 통합성, 국제성, 진취성
중부권역 (예산, 청양, 홍성)	역사문화와 전원경관이 우수하면서 신도시 활성화 권역	전통성, 자연성, 활기성
백제유교문화권역 (공주, 부여, 논산)	백제유교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한 역사문화 자연 우수 권역	전통성, 섬세함, 우아함, 창의성
남부권역 (금산, 계룡)	산악경관 및 농촌·전원경관의 중심 권역	자연성, 안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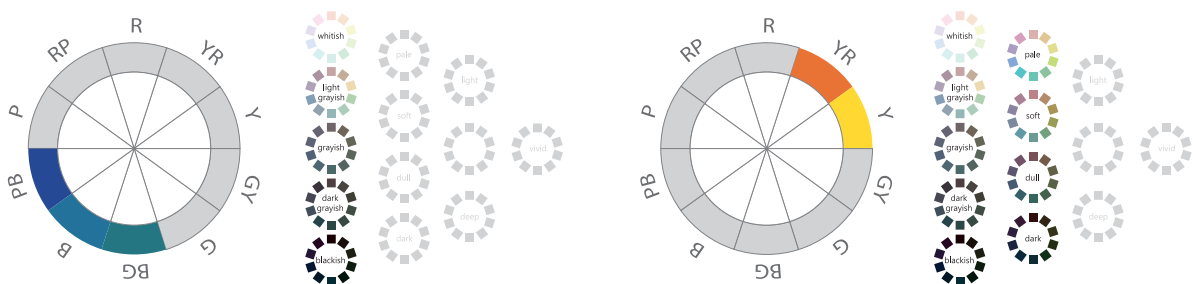
2.2 권역별 대표색채

1) 북부권역(당진, 아산, 천안)

- 첨단산업지역의 미래지향성, 세련됨, 모던함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색채를 선정하여, 심플하고 모던한 색채계획으로 첨단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함
- 북부권역 대표 색채범위를 Y, YR계열의 채도 6이하, BG, B, PB계열 중심의 채도 4이하, 무채색으로 함



색채사용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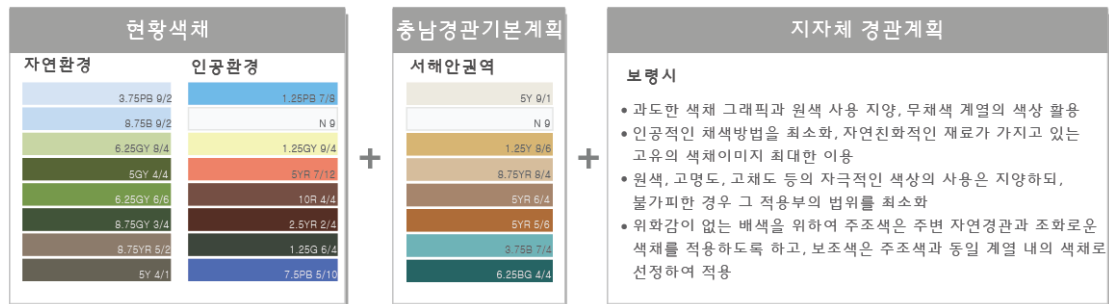


대표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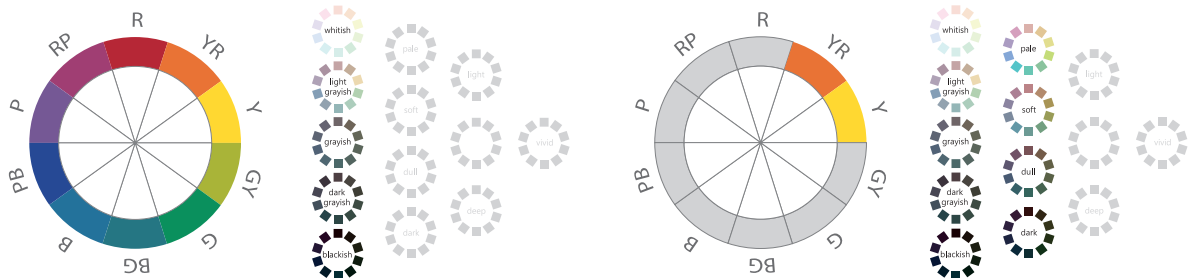
2.5B 7/2	N8,5	2.5PB 8/2	5P 6/1	10YR 9/1
7.5BG 4/2	7.5B 7/2	3.75PB 5/4	10PB 5/4	7.5YR 5/2

2) 서해안권역(보령, 서산, 서천, 태안)

- 해양관광지역의 개방적이면서 국제적, 진취적인 서해안권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바다, 산, 갯벌을 상징할 수 있는 색채를 서해안권역의 대표색채로 함
- 색채범위는 Y, YR계열의 채도 6이하, 무채색, 각 색상계열별 채도 30이하의 graysh톤을 적용함



색채사용 범위



대표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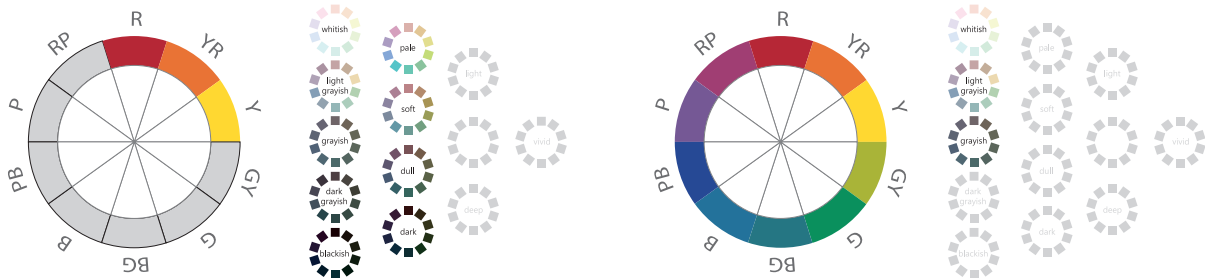
6.25YR 8/2	10YR 7/2	2.5BG 8/2	5B 7/2	6.25P 7/2
6.25YR 6/2	10YR 6/1	3.75BG 5/2	3.5PB 5/2	6.25P 5/2

3) 중부권역(예산, 청양, 홍성)

- 칠갑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신도시의 이미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전통성, 자연성을 바탕으로 절제되고 깊이감 있으면서 도시적인 이미지의 배색이 가능한 색채를 대표 색채로 정함
- 무채색, R, Y, YR계열의 채도 6이하, 각 색상계열별 채도 3이하의 톤인톤 배색기법³⁾을 적용하도록 함

현황색채		충남경관기본계획	
자연환경	인공환경	중부권역	
8.75B 9/2	2.5PB 7/4	5B 9/1	+
5B 8/4	N 9	10Y 9/2	
6.25GY 8/4	5GY 8/1	7.5Y 9/2	
5GY 4/4	6.25GY 7/4	7.5Y 8/4	
6.25GY 6/6	8.75R 5/6	5YR 8/1	
6.25GY 4/4	7.5R 5/6	10Y 8/1	
8.75YR 5/2	6.25B 7/6	5Y 7/1	
5Y 4/1	7.5B 6/8	2.5Y 4/2	

색채사용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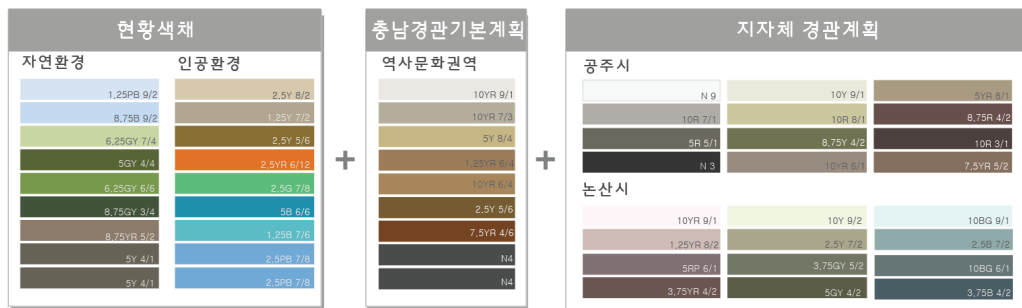
대표색채

5R 9/1	5YR 8/2	10YR 8/4	5Y 9/1	7.5Y 8/4
3.75R 7/2	6.25YR 5/2	10YR 7/1	2.5Y 7/2	1.25Y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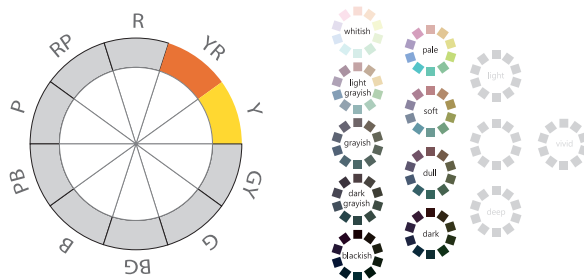
1) 같은 톤의 조합에 의한 배색기법으로 동일색상을 원칙으로 하고 인접, 유사색상의 범위 내에서 명도차가 가까운 배색을 말하나, 최근에는 톤은 동일하지만 배색은 비교적 자유로운 배색을 포함시키고 있음

4) 백제유교문화 권역(공주, 부여, 논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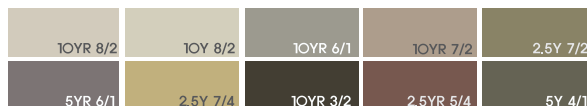
- 역사문화지역으로서 전통적이면서 섬세하고, 우아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색채를 백제유교문화 권역 대표색채로 정하여, 차분하고 정돈된 분위기 속에 풍부한 자연환경과 조화롭고 편안한 색채로 계획될 수 있도록 함
- 대표색채는 Y, YR계열 중심의 중 · 고명도/중 · 저채도, 중 · 고명도의 무채색으로 함



색채사용 범위



대표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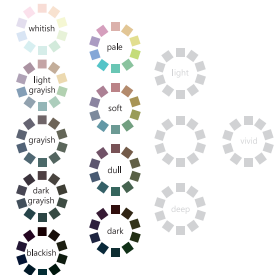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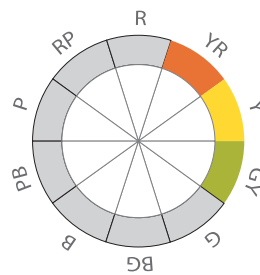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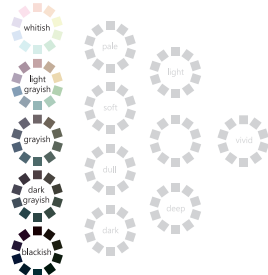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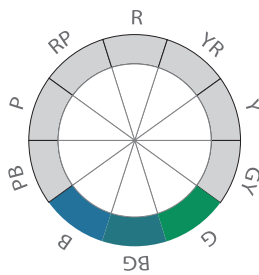


5) 남부권역(계룡, 금산)

- 산악경관과 전원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색채를 남부권역의 대표색으로 하여, 자연성을 반영하면서 안정성을 줄 수 있는 색채계획을 유도함
- 대표색채는 Y, YR, GY, G, BG, B 계열의 중 · 고명도/저채도의 색채로 함

현황색채		+	충남경관기본계획 남부권역
자연환경	인공환경		
1.25PB 9/2	10B 6/8		7.5GY 4/4
8.75B 9/2	5Y 7/1		6.25GY 7/2
5GY 8/4	10Y 9/6		5YR 9/1
3.75GY 4/4	8.75R 7/10		8.75R 7/2
6.25GY 6/6	10R 5/4		8.75YR 8/2
3.75G 4/6	10GY 4/1		5Y 7/1
8.75R 7/2	2.5G 5/8		7.5Y 6/6
5Y 4/1	7.5PB 3/10		5Y 4/1

색채사용 범위



대표색채

5YR 8/1	10YR 9/1	2.5Y 6/2	5Y 8/4	10Y 7/2
10YR 5/1	10YR 4/1	10YR 3/2	5YR 5/4	5Y 5/4

2.3 건축물 용도별 색채 가이드라인

1) 단독주택

도시지역

북부권역/서해안권역/백제유교문화권역

[지붕] N6이하
YR계열 명도6이하/채도2 이하

5YR 6/0.5	7.5YR 5/1	10YR 5/1
N6	N4	5YR 4.5/2

[벽체] N6이상
YR,Y계열 명도4이상/채도4이하

N 8	6Y 9/1	1.5Y 9/1
0.5Y 7/1	1Y 8.5/1	5.5Y 9/2

[배색예시]



중부권역

[지붕] YR계열 명도4-6/채도4 이하

1.5YR 4.5/2	5YR 4.5/2	10YR 5/4
5YR 6/1	10YR 6/1	10YR 5/1

[벽체] 전 색상계열 명도 4이상/채도 4이하

10R 8/2	10YR 8/2	5Y 8/2
10R 7/2	10YR 7/2	5Y 7/2

[배색예시]



남부권역

[지붕] YR계열 명도4-6/채도4 이하

1.5YR 4.5/2	5YR 4.5/2	10YR 5/4
5YR 6/1	10YR 6/1	10YR 5/1

[벽체] N6이상
YR,Y계열 명도4이상/채도4이하

N 8	6Y 9/1	1.5Y 9/1
0.5Y 7/1	1Y 8.5/1	5.5Y 9/2

[배색예시]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 및 업무건축물

공공건축물

산업 및 기타 건축물

비도시지역

북부권역/ 백제유교문화권역

[지붕] YR계열 명도4-6/채도2이하

5YR 5/2	7.5YR 5/2	10YR 5/2
5YR 4/2	7.5YR 4/2	10YR 4/2

[벽체] 무채색

YR, Y계열 명도4이상/채도4이하

10YR 8.5/1.5	10YR 8/2	2.5Y 8/2
10YR 6/2	2.5YR 7/2	7.5YR 5/3

[배색예시]



서해안권역

[지붕] N5-8

YR계열 명도4-6/채도2이하

5YR 5/2	7.5YR 5/2	10YR 5/2
5YR 4/2	7.5YR 4/2	10YR 4/2

[벽체] N7이상

YR계열 명도8이상/채도2이하

N 9	5YR 9/1	10YR 9/2
N 8	5YR 9/2	10YR 8/2

[배색예시]



중부권역

[지붕] YR계열 명도4-6/채도2이하

5YR 5/2	7.5YR 5/2	10YR 5/2
5YR 4/2	7.5YR 6/2	10YR 6/2

[벽체] R, YR, Y계열 명도5이상/채도2이하

10R 8/2	10YR 8/2	5Y 8/2
10R 7/2	10YR 7/2	5Y 7/2

[배색예시]



남부권역

[지붕] YR, Y계열 명도4이상/채도1이하

5YR 6/0.5	5YR 6/1	3Y 7/2
10YR 5/0.5	5Y 5/1	2Y 4/1

[벽체] N4이상

YR, Y계열 명도4이상/채도4이하

1Y 8.5/1.5	7Y 8.5/3	10YR 7.5/2.5
7.5YR 7.5/2	10YR 6/2	5Y 7/2

[배색예시]



2) 공동주택

도시지역

북부권역

[지붕] N6이하

YR계열 명도6이하/채도2이하

5YR 6/0.5	7.5YR 5/1	10YR 5/1
N6	N4	5YR 6/1

[벽체] N6이상

YR,Y계열 명도6이상/채도4이하

BG,B,PB계열 명도6이상/채도4이하

N 9	6Y 9/1	6Y 9/2
N 8	2.5Y 9/2	5YR 8/1
5.5BG 7/1	3.5BG 6/1	7.5PB 8/2

[배색예시]



서해안권역

[지붕] N5-8

YR,Y계열 명도5-8/채도2이하

N 7	5YR 7/1	10YR 7/1
N 6	5YR 6/1	10YR 6/1

[벽체] N4이상

YR,Y계열 명도6이상/채도4이하

R,G,Y,G,BG,B,PB,P,RP계열 명도6이상/채도3이하

N 9	2.5Y 8.5/2	10BG 8/1
5YR 8/1	2.5Y 7/2	7.5PB 8/2
5YR 6/2	5B 9/1	5P 7/1

[배색예시]



중부권역

[지붕] YR계열 명도6이하/채도2이하

5YR 6/0.5	7.5YR 5/1	10YR 5/1
1.5YR 4.5/2	5YR 4.5/2	10YR 4/1

[벽체] N4이상

R,YR,Y계열 명도5이상/채도2이하

N 9	2.5Y 9/2	7.5YR 7/2
N 8	5YR 7/1	2.5Y 7/2
10R 8/2	10R 7/2	2.5Y 6/2

[배색예시]



백제유교문화권역

[지붕] N6이하

YR,Y계열 명도6이하/채도2이하

N5	6Y 5.5/1	1.5Y 6/1
N 6	0.5Y 4/1	1.5Y 4.5/1

[벽체] N4이상

YR,Y계열 명도4이상/채도6이하

N 9	5YR 8/1	2Y 9/2
N 8	5YR 7/2	5Y 8/3
5YR 9/1	10YR 5/4	5Y 6/4.5

[배색예시]



남부권역

[지붕] YR,Y계열 명도5이하/채도2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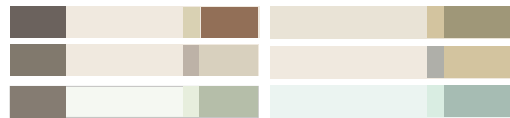
5YR 5/1	10YR 5/1	5Y 5/2
5YR 4/1	10YR 3/2	5Y 4/2

[벽체] N4이상

YR,Y,GY,G,BG계열 명도4이상/채도4이하

5YR 9/1	10Y 9/1	5G 9/2
5YR 8/2	2.5Y 8/2	2.5G 7/2
2.5YR 4.5/1	5.5GY 8.5/1.5	5BG 9/2

[배색예시]



비도시지역

북부권역

[지붕] N4~6
YR계열 명도6이하/채도2이하

N 5	7.5YR 5/2	10YR 5/2
N 4	7.5YR 4/2	10YR 4/2

[벽체] 무채색
YR, Y계열 명도4이상/채도6이하
BG, B, PB계열 명도6이상/채도4이하

N 9	10YR 9/1	10YR 9/4
2.5Y 8/4	2.5Y 7/2	2.5Y 6/4
7.5BG 7/3	7.5B 7/2	10PB 6/2

[배색예시]



서해안권역

[지붕] YR계열 명도6이하/채도4이하

5YR 5/2	7.5YR 5/2	10YR 5/2
5YR 4/2	7.5YR 4/2	10YR 4/2

[벽체] N4이상
YR, Y계열 명도4이상/채도4이하

N 9	5YR 9/1	10YR 9/1
N 8	2.5YR 8/2	10YR 7/2
N 6	5YR 7/1	7.5YR 6/2

[배색예시]



중부권역

[지붕] YR계열 명도6이하/채도2이하

5YR 5/2	7.5YR 5/2	10YR 5/2
5YR 4/2	7.5YR 6/2	10YR 6/2

[벽체] N4이상
R, YR, Y계열 명도5이상/채도2이하

N 9	5YR 9/1	2.5Y 9/2
N 8	10YR 7/1	10Y 5/1
10R 8/2	10R 7/2	5YR 6/2

[배색예시]



백제유교문화권역

[지붕] YR계열 명도5이하/채도4이하

5YR 5/2	7.5YR 2.5/2	2YR 2.5/3.5
5YR 4/2	4.5YR 4/3	0.5YR 2/1.5

[벽체] N4이상

YR,Y계열 명도4이상/채도4이하

N 9	5YR 9/1	10YR 9/1
N 8	2.5YR 8/2	10YR 7/2
N 6	5YR 7/1	7.5YR 6/2

[배색예시]



남부권역

[지붕] YR,Y계열 명도2~4/채도2이하

7.5YR 4/2	7.5YR 2.5/2	0.5Y 4/1
5YR 4/1	10YR 3/2	5Y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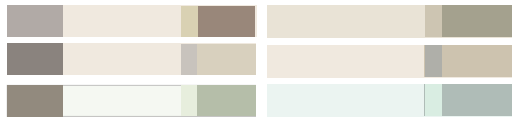
[벽체] N4이상

YR,Y계열 명도4이상/채도4이하

GY,G,BG계열 명도4이상/채도2이하

5YR 9/1	2Y 9/2	5G 9/2
5YR 8/1	2.5Y 8/2	5BG 7/2
5YR 7/2	5Y 8/3	10B 8/1.5

[배색예시]



3) 상업 및 업무건축물

도시 · 비도시지역

북부권역

[지붕] N6이하
YR, Y계열 명도6이하/채도2이하
BG, B, PB계열 명도6이하/채도2이하

5BG 5.5/0.5	10YR 5/1	10PB 3.5/0.5
5.5BG 4/0.5	5YR 3.5/1	10B 3.5/1

[벽체] N6이상
YR, Y계열 명도6이상/채도4이하
BG, B, PB계열 명도6이상/채도3이하

5YR 9/1	2.5Y 9/1	10B 8/2
5YR 8/1	2.5Y 8/2	2.5BG 7/2
5YR6/2	2.5Y 6/1	10PB 6/1

[배색예시]



서해안권역

[지붕] N6이하
전색상계열 명도6이하/채도4이하

5PB 5/1	10YR 5/1	10Y 4/1
5BG 4/1	10PB 4/1	10YR 3/1

[벽체] N4이상
전색상계열 명도4이상/채도2이하

10R 9/1	N 9	10B 8/2
10YR 9/1	10Y 8.5/1	5B 7/1
10YR 8/2	10GY 8.5/1	10P 9/1

[배색예시]



중부권역

[지붕] N6이하
YR, Y계열 명도6이하/채도2이하
BG, B, PB계열 명도6이하/채도2이하

5BG 5.5/0.5	10YR 5/1	10PB 3.5/0.5
5.5BG 4/0.5	5YR 3.5/1	10B 3.5/1

[벽체] N4이상
R, YR, Y계열 명도5이상/채도2이하
BG, B, PB계열 명도6이하/채도2이하

N 9	2.5Y 8.5/2	10BG 8/1
N 5	2.5Y 7/2	7.5PB 8/1
5YR 8/1	5YR 6/2	5B 9/1

[배색예시]



백제유교문화권역

[지붕] N6이하
YR계열 명도3~6/채도4이하

N 6	1.5YR 4.5/2	5YR 4.5/2
N 4	0.5YR 3.5/2	3YR 3.5/2

[벽체] N4이상
YR,Y계열 명도4이상/채도6이하

N 8	5YR 8/1	2.5Y 8/2
N5	5YR 7/2	5Y 8/3
N6	10YR 5/4	5Y 6/4.5

[배색예시]



남부권역

[지붕] YR,Y계열 명도5이하/채도2이하

5YR 5/1	10YR 5/1	5Y 5/2
5YR 4/1	10YR 3/2	5Y 4/2

[벽체] N4이상
YR,Y계열 명도4이상/채도4이하
GY,G,BG계열 명도4이상/채도2이하

5YR 9/1	2Y 9/2	5G 9/2
5YR 8/1	2.5Y 8/2	5BG 7/2
5YR 7/2	5Y 8/3	5Y 6/4.5

[배색예시]



4) 공공건축물

도시 · 비도시지역

북부권역

[지붕] N6이하
YR, Y 계열 명도6이하/채도2이하
BG, B, PB 계열 명도6이하/채도2이하

5BG 5.5/0.5	10YR 5/1	10PB 3.5/0.5
5.5BG 4/0.5	5YR 3.5/1	10B 3.5/1

[벽체] N6이상
YR, Y 계열 명도6이상/채도4이하
BG, B, PB 계열 명도6이상/채도3이하

5YR 9/1	2.5Y 8.5/2	10B 9/2
5YR 8/1	2.5Y 6/2	10B 7/2
5YR 7/2	5BG 8/3	10PB 9/2

[배색예시]



서해안권역

[지붕] N6이하
전 색상계열 명도6이하/채도2이하

5PB 5/1	10YR 5/1	10Y 4/1
5BG 4/1	10PB 4/1	10YR 3/1

[벽체] N4이상
전 색상계열 명도4이상/채도2이하

N 9	2.5Y 8.5/2	10BG 8/1
N 5	2.5Y 7/2	7.5PB 8/2
5YR 8/1	5B 9/1	5P 7/1

[배색예시]



중부권역

[지붕] N6이하
YR, Y 계열 명도6이하/채도2이하

N 6	5YR 5/1	10YR 5/1
N 4	5YR 4/1	10YR 3/2

[벽체] N4이상
전 색상계열 명도5이상/채도2이하

N 9	5YR 9/1	2.5Y 9/2
N 8	5YR 7/1	7.5YR 7/2
10R 7/2	5YR 6/2	10Y 5/1

[배색예시]



백제유교문화권역

[지붕] N6이하

YR계열 명도3~6/채도4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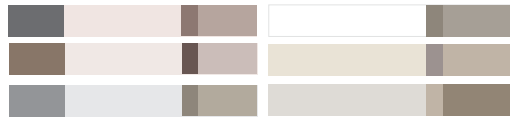
N4	1.5YR 4.5/2	5YR 4.5/2
N6	0.5YR 3.5/2	3YR 3.5/2

[벽체] N4이상

YR,Y계열 명도4이상/채도6이하

N9	5YR 9/1	2Y 9/2
N8	5YR 7/2	2.5Y 8/2
N5	10YR 5/4	5Y 6/4.5

[배색예시]



남부권역

[지붕] YR,Y계열 명도5이하/채도2이하

5YR 5/1	10YR 5/1	5Y 5/2
5YR 4/1	10YR 3/2	5Y 4/2

[벽체] N4이상

YR,Y,GY,G,BG계열 명도4이상/채도4이하

5YR 9/1	10Y 9/1	5G 9/2
5YR 8/2	2.5Y 8/2	2.5G 7/2
5YR 5/4	5.5GY 8.5/1.5	SBG 7/2

[배색예시]



5) 산업 및 기타 건축물

도시 · 비도시지역

북부권역

[지붕] N6이하

YR, Y계열 명도6이하/채도2이하
BG, B, PB계열 명도6이하/채도2이하

5BG 5.5/0.5	10YR 5/1	10PB 3.5/0.5
5.5BG 4/0.5	5YR 3.5/1	10B 3.5/1

[벽체] N4이상

YR, Y계열 명도6이상/채도3이하
BG, B, PB계열 명도6이상/채도3이하

N 9	5YR 9/1	2.5Y 8.5/2
N 7	5YR 7/2	2.5Y 6/2
5BG 8/2	10B 7/2	10PB 9/2

[배색예시]



서해안권역

[지붕] N6이하

YR, Y계열 명도6이하/채도2이하

N 6	5YR 5/1	10YR 5/1
N 4	5YR 4/1	10YR 3/2

[벽체] YR, Y계열 명도4이상/채도3이하

5YR 9/1	10YR 9/1	10Y 8.5/1
2.5YR 8/2	10YR 7/2	5Y 7/1
5YR 7/1	7.5YR 6/2	5Y 7/2

[배색예시]



중부권역

[지붕] N6이하

YR, Y계열 명도6이하/채도2이하

N 6	5YR 5/1	10YR 5/1
N 4	5YR 4/1	10YR 3/2

[벽체] N4이상

R, YR, Y계열 명도5이상/채도2이하

N 9	5YR 9/1	2.5Y 9/2
N 8	5YR 7/1	7.5YR 7/2
10R 8/2	2.5YR 6/2	2.5Y 7/2

[배색예시]



백제유교문화권역

[지붕] N6이하

YR계열 명도3~6/채도4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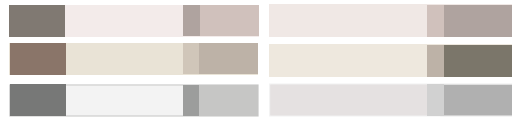
N4	1.5YR 4.5/2	5YR 4.5/2
N6	0.5YR 3.5/2	3YR 3.5/2

[벽체] N4이상

YR,Y계열 명도4이상/채도2이하

N9	5YR 9/1	10Y 8.5/1
N8	2.5YR 8/2	5Y 7/1
N6	5YR 7/1	5Y 7/2

[배색예시]



남부권역

[지붕] YR,Y계열 명도5이하/채도2이하

5YR 5/1	10YR 5/1	5Y 5/2
5YR 4/1	10YR 3/2	5Y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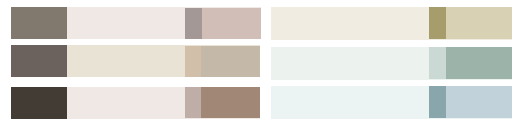
[벽체] N4이상

YR,Y계열 명도4이상/채도3이하

GY,G,BG,B계열 명도4이상/채도2이하

5YR 9/1	2Y 9/2	5G 9/2
5YR 8/1	2.5Y 8/2	5BG 7/2
5YR 7/2	5Y 8/3	10B 8/1.5

[배색예시]



2.4 건축물 소재색 가이드라인

- 최근 건축물 소재 동향은 친환경의 지속적으로 유지가능한 소재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공공건축물의 석재와 유리, 목재, 금속패널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외벽을 지양하고 유리와 Grey의 스틸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현대적이면서 개방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음
- 또한 외부 벽면은 커튼월 등의 개방감 있는 소재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로움을 중시하는 소재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충청남도에서도 건축물 소재 선정에 있어서, 지역의 소재 및 자연소재 활용을 권장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면서 정체성을 부여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 건축물 유형별 소재 가이드라인

■ 단독주택

구분	내 용
지붕	● 경사지붕에서는 평기와 또는 금속기와의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아연계 강판, 스틸, 동기와 등의 자재 사용을 권장함
외벽	● 벽돌과 석판, 목재 등 친환경 소재를 중심으로 적용함 ● 외벽에 사이딩과 드라이비트 등 도장과 인공소재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색채를 지붕 색채와 유사한 톤으로 적용하도록 하며, 주외장재, 부외장재, 포인트 외장재의 3종류 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함
그 외	● 가설벽을 설치하는 경우, 재료는 건축물 외벽의 마감수준과 비슷한 수준의 재료를 사용함



● : 권장사항, ◎ : 규제사항

■ 공동주택

구분	내 용
외벽	◎ 유리색은 입면의 70%이상 차지할 경우 고채도의 색 사용을 금함
그 외	●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로 구분하여 변화있는 입면 디자인을 조성하도록 함 ● 특히, 저층부에는 다양한 재료와 색채로 변화를 연출하고, 외부 입면에 가벽을 설치하거나 색채 등을 활용함 ● 출입구는 저층부와 조화되는 중·저채도의 석재와 목재 등 자연소재 및 차분한 색채의 소재를 사용하도록 함 ● 주동 출입구와 저층부는 이질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소재를 달리하도록 함



● : 권장사항, ◎ : 규제사항

■ 상업 및 업무 건축물

구분	내 용
외벽	● 장보다는 석재나 유리나 같은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함 ● 유리가 건축물 외벽의 70%이상인 경우, 반사율을 10%이하로 낮추고 그 외의 소재는 채도 3이하의 저채도색으로 마감하도록 함 ● 외장패널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저층부에는 자연소재로 마감하도록 하며, 분채도장의 채도를 20이하의 안정감 있는 주조색을 적용하도록 함 ● 화강암과 같은 평범한 소재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석재를 사용하도록 함



● : 권장사항, ◎ : 규제사항

■ 공공건축물

구분	내 용
외벽	● 가급적 친근감 있는 재료 및 자연재료의 사용을 권장하며, 건축물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소재를 선택함 ● 많은 소재의 적용은 공공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소재를 적용하되 지역소재를 활용한 창의적인 소재를 사용하도록 함



● : 권장사항, ◎ : 규제사항

■ 산업 및 기타 건축물

구분	내 용
지붕	◎ 고채도의 소재를 지양하도록 함 ● 자연소재 사용을 권장하며, 인공소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채도 3이하의 저채도의 소재를 적용하도록 함
외벽	● 외장재 사용은 2종류 이내를 권장함 ● 전면도로에서 측벽이 인지되는 경우 전면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함 ●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더라도 저층부에는 석재와 벽돌, 목재 등의 자연소재를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경관의 연속성을 확보함
그 외	● 공장 및 창고 등은 자연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친환경 자연소재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함 ● 인접한 건축물과 유사한 재료 및 색채, 형태를 적용하여 주변환경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샌드위치 패널 등의 소재를 적용하더라도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톤트 색을 적용하도록 함



● : 권장사항, ◎ : 규제사항

2) 건축재료 권장색채

- 건축재료는 마감 재료의 성격에 따라 적용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색채 가이드라인은 지붕재료의 분류 표4의 3, 4, 5 벽체 재료의 분류 표5의 1, 2의 벽돌 재료에 적용하도록 함

(1) 지붕재료

- 지붕재료는 천연소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기타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 제시된 색채범위 안에서 색상을 선택하도록 하고 유광의 소재는 피하도록 함 (단, 특성화지구 조성과 같은 경우는 관할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함)

표 4 지붕재료의 분류

분류	적용방안	비고
1	전통기와	무광
2	시멘트기와	
3	슬레이트형 칼라강판	
4	기와형 칼라강판	
5	아스팔트 싱글	
	- N5 이하, N3 이상 - 채도 6 이하 채도 40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유형별 지붕색채 범위를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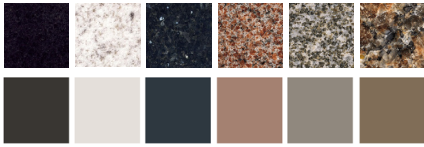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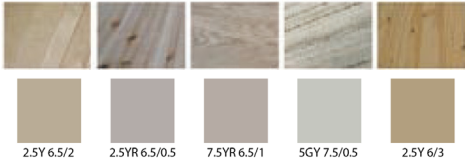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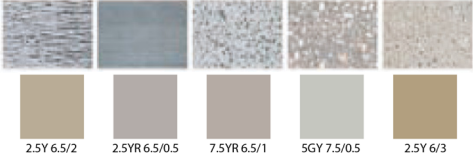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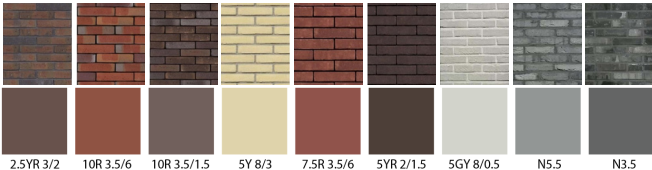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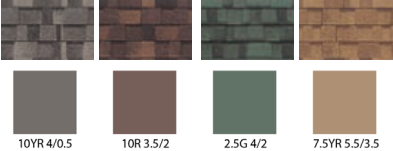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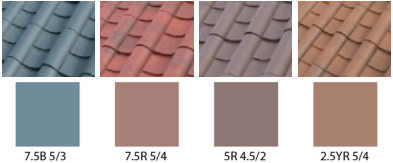
(2) 벽체재료

- 벽체의 재료는 벽돌, 블록, 천연석재 등의 재료를 권장하며, 기타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 제시된 색채범위 안에서 색상을 선택하도록 함

표 5 벽체재료의 분류

분류	적용방안	비고
1	도장 및 도장 방식에 의해 재료의 색채가 표현되는 경우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채범위 도장, 드라이비트, 인공 패널류, 비닐사이딩류, 인공 석재류, 타일류 등
2	재료 자체의 물성에 의해 색채가 표현되는 경우	채도 40이하 목재, 블록, 노출콘크리트, 시멘트 압출성형패널, 천연석재, 부식강판 등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채범위	벽돌
3	위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거나 별도의 색채 계획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 허가 시 개별적 검토 -

■ 권장 소재색

구분	내 용	
권장	- 천연소재를 사용하여 소재색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에도 제시된 색채범위 안에서 색상을 선택하도록 함 - 자재 전체를 착색하는 경우, 제시된 색채범위 안에서 색상을 선택하도록 함 - 유리소재는 투명, 저반사(반사율 10%내외) 유리 사용을 권장함	
규제	- 기와, 강판 등의 경우 유광은 피하도록 함 - 건축물 규모에 비해 넓은 면적의 고광택 스텐레스의 사용은 제한하도록 함	
심의	- 분홍, 자주 계열의 고채도 유리 및 고반사 유리 사용은 자제하도록 하며, 이를 적용할 시에는 별도의 심의를 받도록 함	
권장 소재 예시	석재	 N1.5 7.5YR 8.5/0.5 10B 1.5/1.5 2.5YR 5/3.5 2.5Y 5/1 10YR 4/2.5
	목재	 2.5Y 6.5/2 2.5YR 6.5/0.5 7.5YR 6.5/1 5GY 7.5/0.5 2.5Y 6/3
	콘크리트	 2.5Y 6.5/2 2.5YR 6.5/0.5 7.5YR 6.5/1 5GY 7.5/0.5 2.5Y 6/3
	벽돌	 2.5YR 3/2 10R 3.5/6 10R 3.5/1.5 5Y 8/3 7.5R 3.5/6 5YR 2/1.5 5GY 8/0.5 N5.5 N3.5
	아스팔트 싱글	 10YR 4/0.5 10R 3.5/2 2.5G 4/2 7.5YR 5.5/3.5
	기와 (점토류, 철판, 함석)	 7.5B 5/3 7.5R 5/4 5R 4.5/2 2.5YR 5/4

* 표에서 제시하는 소재색은 병치혼색이 대부분이므로 단색 컬러칩으로 표현했을 때 가장 근접한 먼셀값으로 표현하였음. 색상값은 40색상한 기준으로 반올림한 수치임

2.5 건축물 색채 적용 예시

도시지역 시뮬레이션(단독주택, 연립주택, 공동주택)



Before

* 적용배색 : 북부권역 대표색채 적용



After

비도시지역 시뮬레이션(공장, 축사, 단독주택)



Before

* 적용배색 : 중부권역 대표색채 적용



After

3. 가이드라인 적용 및 운용방안

3.1 색채 가이드라인 활용매뉴얼

3.2 색채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3.3 충청남도 건축물 컬러칩

3. 가이드라인 적용 및 운용방안

3.1 색채 가이드라인 활용매뉴얼

- 본 가이드라인의 이해 도모와 활용 확산을 위해 용어해설부터 색채 사용 범위 및 방법, 주체별 활용사례 및 협의 절차 등 가이드라인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시함
- 가이드라인 매뉴얼의 활용주체는 관리자인 1. 공무원(도/시/군)을 비롯한 공사, 공단의 실무자, 2. 민간인 건축사무소, 엔지니어링 업체를 대상으로 함
- 본 가이드라인은 1. 공무원 및 공사, 공단의 실무자가 건축물을 허가, 2. 민간 건축사무소, 엔지니어링 업체가 색채계획 시행 및 건축물 신고, 3. 도시계획 및 경관관련 사업 시 심의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례 및 절차를 매뉴얼에서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의 활용 확산에 기여하도록 함

1) 개요

■ 충청남도 건축물 색채 매뉴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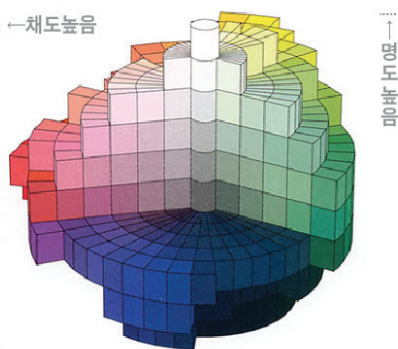
- 충청남도 건축물 색채 매뉴얼은 충청남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건축물에 지역과 조화된 색채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1. 충청남도의 건축물 색채 적용 방침과 권장색을 정리
 2. 충청남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별 색채사용 범위와 방법
 3. 건축물 구성요소별 색채적용 지침
 4. 충청남도 관련 부서와의 업무협의 방법 및 절차



조화로운 색채경관 조성을 위한 기본 지침서

■ 색채표기방법 – 먼셀 표색계

- 색의 다양한 표기 방법 중 먼셀 컬러 시스템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색의 전달에 있어 색상/ 명도/ 채도라는 3가지 속성에 의해 표현하여 이해와 전달이 빠르고, 이러한 3속성에 의해 컬러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면 사용하기 편리함

색상	• 관련 이미지 : 따뜻한-차가운 • 표기는 R, YR, Y, GY, G, BG, B, PB, P, RP로 한다.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 • 각각의 색상을 자세히 표현하기 위해 1~10을 붙여 10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기준이 되는 색상을 5로 한다. • 권장색 예시는 사용의 편의를 위해 『Munsell Book of Color』의 구성과 동일한 2.5/ 5.0/ 7.5/ 10.0으로 제시하였다.	 ←채도높음 ↑가장 밝아
명도	• 관련 이미지 : 가벼운-무거운/ 부드러운-딱딱한 • 명도의 단계는 Neutral의 약호인 N으로 표기한다. • 색의 밝은 정도를 0~10으로 표기 (실제는 1.5~9.5)하고 숫자가 클수록 밝으며, 낮을수록 어둡다. • 가장 밝은 색은 하양으로 명도 9.5이며, 가장 어두운 색은 검정으로 명도 1.5이다.	먼셀번호의 표기는 색상, 명도, 채도 순으로 아래와 같이 표기합니다. 5YR 8/3 5YR 8/3 색상 : 5YR 명도 : 8 채도 : 3
채도	• 관련 이미지 : 강한-약한/ 화려한-수수한/ 동적인-정적인 • 색상의 선명도가 강하고 약한 정도이다. 환경색채에서 고채도는 강하고 자극적이므로 사용을 자제한다. • 색상의 선명한 정도를 0~14로 표기한다. 숫자가 클수록 선명하며, 낮을수록 탁하다. 하양, 회색, 검정은 색상이 없어 무채색이라하며, 무채색은 색상이 없으므로 채도는 0이 된다.	먼셀의 표기법

2) 방향

■ 충청남도 건축물 색채의 방향

• 건축물 색채디자인의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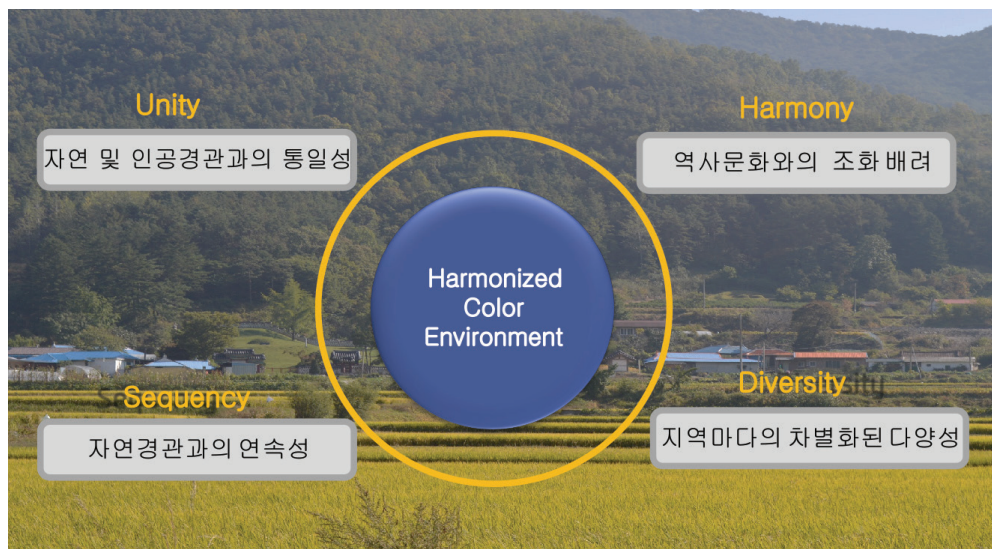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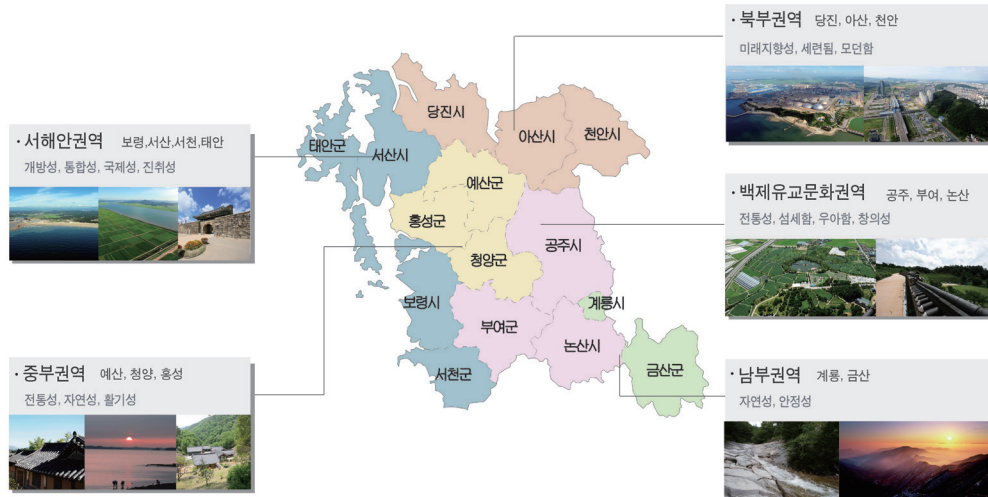
천혜의 자연이 빛고 역사와 문화가 숨을 불어넣어 만든
“행복미소 충청남도”

조화성	연속성	통일성	다양성
·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색채 계획 · 풍부한 역사적 자원을 부각 시킬 수 있는 계획	· 지역의 낙후된 이미지 개선으로 전통과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 · 무질서한 색채경관 정비를 통한 체계적인 지역 이미지 구축	· 자연환경 색채 및 인공환경 색채를 통합할 수 있는 계획으로 통일감 부여	· 자연 및 인공환경 조건에 따라 권역별, 도시 및 비도시의 특성 반영으로 다양한 색채경관 형성

• 환경색채디자인 5대 원칙

1. 자연과 역사, 문화가 돋보이는 경관	충청남도 자연환경의 수려함과 역사문화 환경의 전통성이 드러나는 색채 계획
2.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연속성 강조	자극적인 색채사용을 제한하여 주변과 조화되는 정돈된 경관형성
3. 통합적 색채이미지 구현	통합 가능한 색채요소의 적용 및 각 시·군의 색채관리 시 일관된 철학과 원칙에 의해 적용되도록 체계적인 색채관리지침 확보
4. 지역특성에 따른 색채개념 반영으로 색채경관의 아이덴티티 확보	권역별/환경적/입지적 특성을 반영한 색채계획으로 각 지역의 아이덴티티 확보
5. 공간의 특성화로 다양한 장소화 실현	경관축과 경관거점을 고려한 색채적용으로 장소성과 개성을 살린 경관 연출

■ 충청남도 건축물 색채의 권역별 지침



3) 매뉴얼

충청남도 건축물 색채 매뉴얼은 알기 쉽게 권역과 건축물 용도별로 적용지침이 정리되어 있으며, 모든 건축물 색채는 다음과 같은 통합적인 방향을 숙지하고 적용해야 함

- 01 | 지역과 장소의 경관특성과 조화된 색채를 적용한다.
- 02 | 가로의 연속성과 통일감을 고려한 색채를 적용한다.
- 03 | 건축물 용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배색을 정한다.
- 04 | 주변경관에 시각적 피해를 주는 고채도색의 사용을 금한다.
- 05 | 지속적인 경관형성을 위한 소재를 활용한다.
- 06 | 상징색채의 적용은 충분한 상의를 통해 실시한다.

충청남도의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해서는 본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건축물 색채 지침을 적용하면 됩니다!

■ 색채 가이드라인 적용 전략

- 건축물 색채 계획 시, 최소한 준수해야 할 지침을 따를 경우, 활용 매뉴얼에서의 색채 계획을 적용
- 지역 및 권역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 본문의 색채 계획을 적용



■ 주요 건축물인 주택용도의 주조색에 기초색

(Y, YR계열의 명도 6이상/채도 4이하, N계열의 범위) 적용



■ 권역별 대표색채를 공동주택의 보조색 및 강조색, 공공건축물의 강조색, 상업 및 업무건축물에 적용

권역	이미지	대표색채										
북부권역 (천안,아산, 당진)	미래지향 세련됨 모던함	■ 자연과의 조화된 인공환경 색채조성 (YR, Y 채도 6이하, BG-PB 채도 4이하, 무채색) <table><tr><td>2.5B 7/2</td><td>N8,5</td><td>2.5PB 8/2</td><td>5P 6/1</td><td>10YR 9/1</td></tr><tr><td>7.5BG 4/2</td><td>7.5B 7/2</td><td>3.75PB 5/4</td><td>10PB 5/4</td><td>7.5YR 5/2</td></tr></table>	2.5B 7/2	N8,5	2.5PB 8/2	5P 6/1	10YR 9/1	7.5BG 4/2	7.5B 7/2	3.75PB 5/4	10PB 5/4	7.5YR 5/2
		2.5B 7/2	N8,5	2.5PB 8/2	5P 6/1	10YR 9/1						
7.5BG 4/2	7.5B 7/2	3.75PB 5/4	10PB 5/4	7.5YR 5/2								
서해안 권역 (서산, 태안, 보령, 서천)	개방성 통합성 진취성 국제성	■ 자연과의 조화 속에 다양성과 통일감 있는 환경색채 조성 (YR, Y 채도 6이하, 무채색, 전 색상계열 채도 3이하) <table><tr><td>6.25YR 8/2</td><td>10YR 7/2</td><td>2.5BG 8/2</td><td>5B 7/2</td><td>6.25P 7/2</td></tr><tr><td>6.25YR 6/2</td><td>10YR 6/1</td><td>3.75BG 5/2</td><td>3.5PB 5/2</td><td>6.25P 5/2</td></tr></table>	6.25YR 8/2	10YR 7/2	2.5BG 8/2	5B 7/2	6.25P 7/2	6.25YR 6/2	10YR 6/1	3.75BG 5/2	3.5PB 5/2	6.25P 5/2
		6.25YR 8/2	10YR 7/2	2.5BG 8/2	5B 7/2	6.25P 7/2						
6.25YR 6/2	10YR 6/1	3.75BG 5/2	3.5PB 5/2	6.25P 5/2								
중부권역 (예산, 청양, 홍성)	전통성 자연성 활기성	■ 역사 문화와 자연이 조화된 환경색채의 조성 (R, YR, Y 채도6이하, 무채색, 전 색상계열 채도 3이하) <table><tr><td>5R 9/1</td><td>5YR 8/2</td><td>10YR 8/4</td><td>5Y 9/1</td><td>7.5Y 8/4</td></tr><tr><td>3.75R 7/2</td><td>6.25YR 5/2</td><td>10YR 7/1</td><td>2.5Y 7/2</td><td>1.25Y 5/2</td></tr></table>	5R 9/1	5YR 8/2	10YR 8/4	5Y 9/1	7.5Y 8/4	3.75R 7/2	6.25YR 5/2	10YR 7/1	2.5Y 7/2	1.25Y 5/2
		5R 9/1	5YR 8/2	10YR 8/4	5Y 9/1	7.5Y 8/4						
3.75R 7/2	6.25YR 5/2	10YR 7/1	2.5Y 7/2	1.25Y 5/2								
백제유교 문화권역 (공주, 부여, 논산)	전통성 섬세함 우아함 창의성	■ 역사 문화의 품격이 반영된 우아한 환경색채 조성 (YR, Y 중, 고명도/중, 저채도, 중,고명도의 무채색) <table><tr><td>10YR 8/2</td><td>10Y 8/2</td><td>10YR 6/1</td><td>10YR 7/2</td><td>2.5Y 7/2</td></tr><tr><td>5YR 6/1</td><td>2.5Y 7/4</td><td>10YR 3/2</td><td>2.5YR 5/4</td><td>5Y 4/1</td></tr></table>	10YR 8/2	10Y 8/2	10YR 6/1	10YR 7/2	2.5Y 7/2	5YR 6/1	2.5Y 7/4	10YR 3/2	2.5YR 5/4	5Y 4/1
		10YR 8/2	10Y 8/2	10YR 6/1	10YR 7/2	2.5Y 7/2						
5YR 6/1	2.5Y 7/4	10YR 3/2	2.5YR 5/4	5Y 4/1								
남부권역 (금산, 계룡)	자연성 안정성	■ 쾌적함과 연속성이 고려된 안정된 환경색채 조성 (YR-B 계열의 중,고명도/저채도, 무채색) <table><tr><td>5YR 8/1</td><td>10YR 9/1</td><td>2.5Y 6/2</td><td>5Y 8/4</td><td>10Y 7/2</td></tr><tr><td>10YR 5/1</td><td>10YR 4/1</td><td>10YR 3/2</td><td>5YR 5/4</td><td>5Y 5/4</td></tr></table>	5YR 8/1	10YR 9/1	2.5Y 6/2	5Y 8/4	10Y 7/2	10YR 5/1	10YR 4/1	10YR 3/2	5YR 5/4	5Y 5/4
		5YR 8/1	10YR 9/1	2.5Y 6/2	5Y 8/4	10Y 7/2						
10YR 5/1	10YR 4/1	10YR 3/2	5YR 5/4	5Y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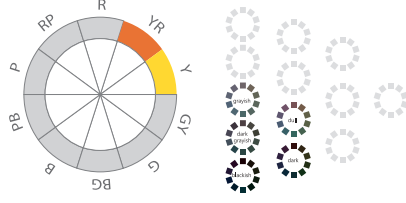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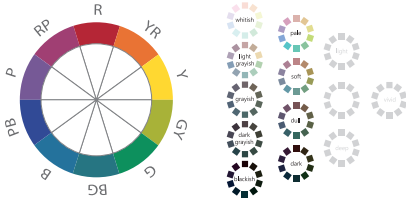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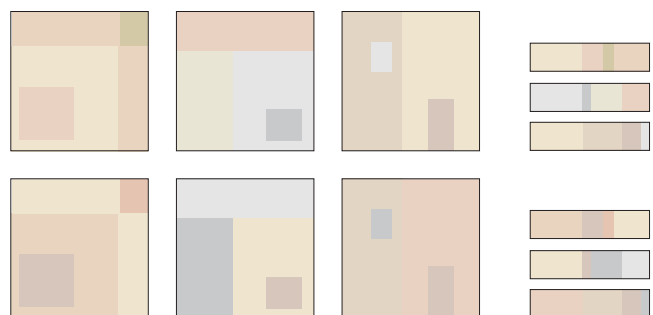
■ 용도별 적용지침 – 단독주택 –

• 적용 시 참고사항

강조색은 권역별 대표색 및 콘셉트에 따라 자유롭게(개성있게) 적용 한다.

– 주조색은 전 색상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2층 이상의 넓은 외벽면을 가진 건축물 벽체 색은 채도 40이하의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 소재는 친환경 석재와 목재를 권장하며, 지붕의 경우 기와와 같은 자연소재의 경사지붕을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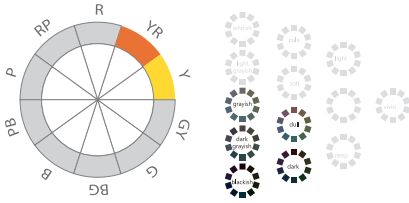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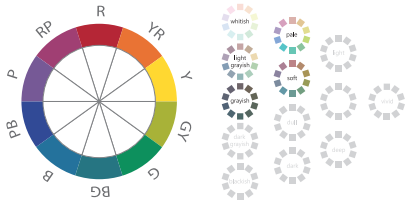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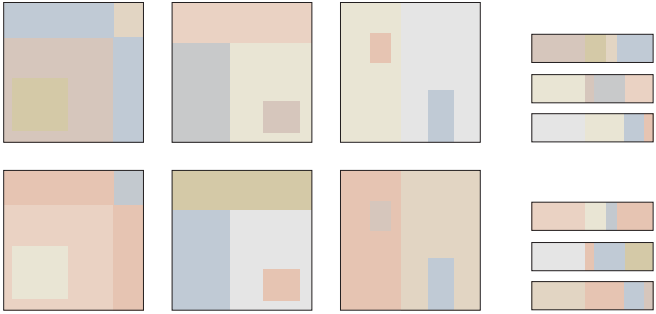
지붕색	■ 색 채 범위 YR, Y계열 명도 60이하/ 채도 40이하, 무채색  ■ 권 장 색 예 시 <table border="1"> <tbody> <tr> <td>7.5YR 4/4</td><td>10YR 2/3</td></tr> <tr> <td>10YR 3/4</td><td>5YR 3/3</td></tr> <tr> <td>10Y 4/4</td><td>2.5Y 2/3</td></tr> <tr> <td>5Y 3/3</td><td>7.5Y 2/2</td></tr> <tr> <td>N4.0</td><td>N3.0</td></tr> </tbody> </table>	7.5YR 4/4	10YR 2/3	10YR 3/4	5YR 3/3	10Y 4/4	2.5Y 2/3	5Y 3/3	7.5Y 2/2	N4.0	N3.0
7.5YR 4/4	10YR 2/3										
10YR 3/4	5YR 3/3										
10Y 4/4	2.5Y 2/3										
5Y 3/3	7.5Y 2/2										
N4.0	N3.0										
벽체색	■ 색 채 범위 전 색상계열, 무채색  ■ 권 장 색 예 시 <table border="1"> <tbody> <tr> <td>7.5YR 8/1.5</td><td>7.5YR 8.5/2</td></tr> <tr> <td>10YR 8.5/2</td><td>5YR 8/3</td></tr> <tr> <td>10Y 9/1</td><td>2.5Y 8.5/1.5</td></tr> <tr> <td>5Y 9/1.5</td><td>7.5Y 8/3</td></tr> <tr> <td>N8.0</td><td>N9.0</td></tr> </tbody> </table>	7.5YR 8/1.5	7.5YR 8.5/2	10YR 8.5/2	5YR 8/3	10Y 9/1	2.5Y 8.5/1.5	5Y 9/1.5	7.5Y 8/3	N8.0	N9.0
7.5YR 8/1.5	7.5YR 8.5/2										
10YR 8.5/2	5YR 8/3										
10Y 9/1	2.5Y 8.5/1.5										
5Y 9/1.5	7.5Y 8/3										
N8.0	N9.0										
배색 예시											

■ 용도별 적용지침 – 공동주택 –

• 적용 시 참고사항

보조색과 강조색은 권역별 대표색 및 콘셉트에 따라 자유롭게(개성있게) 적용 한다.

– 주조색은 충청남도의 기초색(Y, YR 계열 색상 명도 60이상/채도 40이하)을 권장한다.

지붕색	■ 색 채 범위 YR, Y 계열 명도 60이하/ 채도 40이하, 무채색  ■ 권 장 색 예 시 <table border="1"> <tr> <td>7.5YR 4/4</td> <td>10YR 2/3</td> </tr> <tr> <td>5Y 3/2</td> <td>5YR 3/3</td> </tr> <tr> <td>10Y 4/4</td> <td>2.5Y 2/3</td> </tr> <tr> <td>N5.0</td> <td>7.5Y 2/2</td> </tr> <tr> <td>N4.0</td> <td>N3.0</td> </tr> </table>	7.5YR 4/4	10YR 2/3	5Y 3/2	5YR 3/3	10Y 4/4	2.5Y 2/3	N5.0	7.5Y 2/2	N4.0	N3.0
7.5YR 4/4	10YR 2/3										
5Y 3/2	5YR 3/3										
10Y 4/4	2.5Y 2/3										
N5.0	7.5Y 2/2										
N4.0	N3.0										
벽체색	■ 색 채 범위 *B-RP계열 명도 60이상/ 채도 40이하 *R-BG계열 명도 40이상/ 채도 40이하 *무채색  ■ 권 장 색 예 시 <table border="1"> <tr> <td>7.5YR 8/1.5</td> <td>7.5YR 8.5/2</td> </tr> <tr> <td>10B 8/1</td> <td>5YR 8/3</td> </tr> <tr> <td>10Y 9/1</td> <td>2.5Y 8.5/1.5</td> </tr> <tr> <td>2.5PB 8/2</td> <td>7.5Y 8/3</td> </tr> <tr> <td>N8.0</td> <td>N9.0</td> </tr> </table>	7.5YR 8/1.5	7.5YR 8.5/2	10B 8/1	5YR 8/3	10Y 9/1	2.5Y 8.5/1.5	2.5PB 8/2	7.5Y 8/3	N8.0	N9.0
7.5YR 8/1.5	7.5YR 8.5/2										
10B 8/1	5YR 8/3										
10Y 9/1	2.5Y 8.5/1.5										
2.5PB 8/2	7.5Y 8/3										
N8.0	N9.0										
배색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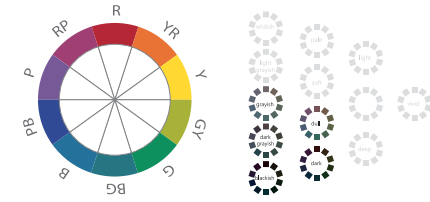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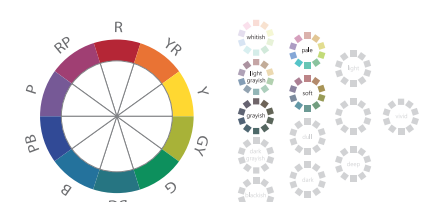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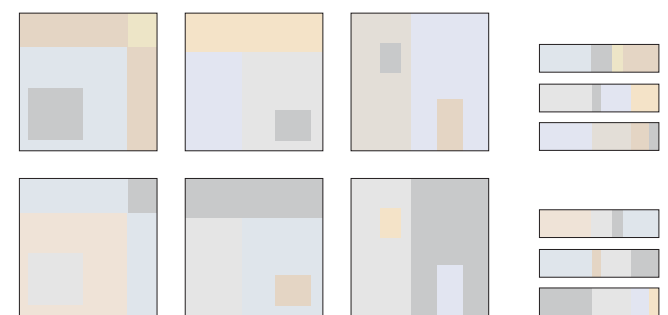
■ 용도별 적용지침 - 상업 및 업무 건축물 -

• 적용 시 참고사항

지역 특색 및 콘셉트에 따라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권역 대표색을 자유롭게(개성있게) 적용한다.

- 외장 소재는 석재와 목재, 유리 등의 자연소재의 적용을 권장한다.

- 복합패널과 같은 도장재는 제시하고 있는 적용색채 규정을 준수한다.

지붕색	■ 색 채 범 위 전 색상계열 명도 6이하/ 채도 4이하, N6이하  ■ 권 장 색 예 시 <table border="1"> <tbody> <tr> <td>7.5YR 4/4</td><td>10YR 2/3</td></tr> <tr> <td>10B 5/3</td><td>10B 3/3</td></tr> <tr> <td>10Y 4/4</td><td>2.5GY 2/3</td></tr> <tr> <td>5YR 3/3</td><td>2.5PB 2/3</td></tr> <tr> <td>N5.0</td><td>N3.5</td></tr> </tbody> </table>	7.5YR 4/4	10YR 2/3	10B 5/3	10B 3/3	10Y 4/4	2.5GY 2/3	5YR 3/3	2.5PB 2/3	N5.0	N3.5
7.5YR 4/4	10YR 2/3										
10B 5/3	10B 3/3										
10Y 4/4	2.5GY 2/3										
5YR 3/3	2.5PB 2/3										
N5.0	N3.5										
벽체색	■ 색 채 범 위 전 색상계열 명도 4이상/ 채도 6이하, N4이상  ■ 권 장 색 예 시 <table border="1"> <tbody> <tr> <td>10YR 9/1</td><td>10YR 8.5/1.5</td></tr> <tr> <td>10B 9/1</td><td>5Y 9/1.5</td></tr> <tr> <td>10Y 9/1</td><td>2.5Y 9/2</td></tr> <tr> <td>7.5YR 9/2</td><td>7.5PB 9/2</td></tr> <tr> <td>N8.0</td><td>N9.0</td></tr> </tbody> </table>	10YR 9/1	10YR 8.5/1.5	10B 9/1	5Y 9/1.5	10Y 9/1	2.5Y 9/2	7.5YR 9/2	7.5PB 9/2	N8.0	N9.0
10YR 9/1	10YR 8.5/1.5										
10B 9/1	5Y 9/1.5										
10Y 9/1	2.5Y 9/2										
7.5YR 9/2	7.5PB 9/2										
N8.0	N9.0										
배색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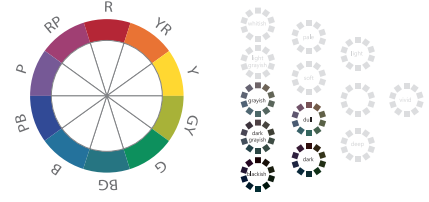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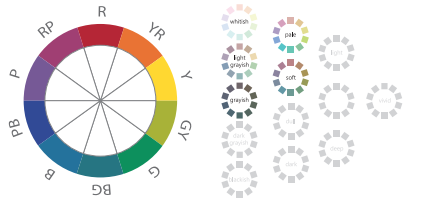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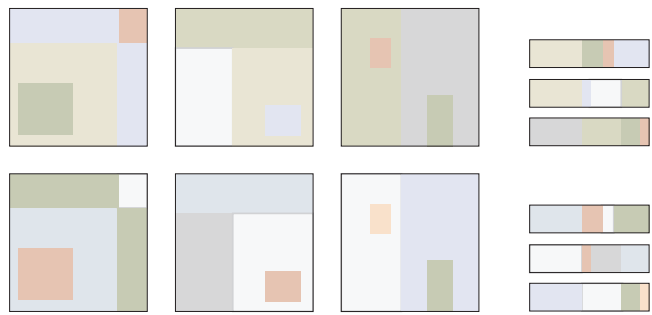
■ 용도별 적용지침 – 공공건축물 –

• 적용 시 참고사항

지역 특색 및 콘셉트에 따라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권역 대표색을 자유롭게(개성있게) 적용한다.

– 외장 소재는 석재와 목재, 유리 등의 자연소재의 적용을 권장한다.

– 복합패널과 같은 도장재는 제시하고 있는 적용색채 규정을 준수한다.

지붕색	■ 색 채 범 위 전 색상계열 명도 6이하/ 채도 4이하, N6이하  ■ 권 장 색 예 시 <table border="1"> <tbody> <tr> <td>2.5PB 2/3</td><td>10B 3/3</td></tr> <tr> <td>10YR 3/4</td><td>10B 5/3</td></tr> <tr> <td>10Y 4/4</td><td>2.5GY 2/3</td></tr> <tr> <td>5YR 3/3</td><td>5GY 2/2</td></tr> <tr> <td>N5.0</td><td>N3.0</td></tr> </tbody> </table>	2.5PB 2/3	10B 3/3	10YR 3/4	10B 5/3	10Y 4/4	2.5GY 2/3	5YR 3/3	5GY 2/2	N5.0	N3.0
2.5PB 2/3	10B 3/3										
10YR 3/4	10B 5/3										
10Y 4/4	2.5GY 2/3										
5YR 3/3	5GY 2/2										
N5.0	N3.0										
벽체색	■ 색 채 범 위 전 색상계열 명도 4이상/ 채도 6이하, N4이상  ■ 권 장 색 예 시 <table border="1"> <tbody> <tr> <td>10B 9/1</td><td>7.5PB 9/2</td></tr> <tr> <td>10YR 9/2</td><td>5Y 9/1.5</td></tr> <tr> <td>10Y 9/1</td><td>2.5GY 8.5/1.5</td></tr> <tr> <td>5YR 8/3</td><td>5GY 8/2</td></tr> <tr> <td>N8.5</td><td>N9.5</td></tr> </tbody> </table>	10B 9/1	7.5PB 9/2	10YR 9/2	5Y 9/1.5	10Y 9/1	2.5GY 8.5/1.5	5YR 8/3	5GY 8/2	N8.5	N9.5
10B 9/1	7.5PB 9/2										
10YR 9/2	5Y 9/1.5										
10Y 9/1	2.5GY 8.5/1.5										
5YR 8/3	5GY 8/2										
N8.5	N9.5										
배색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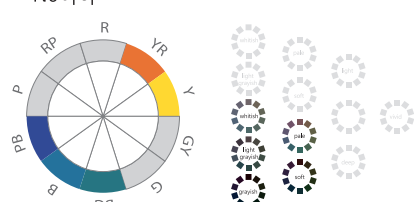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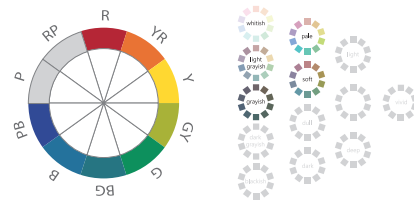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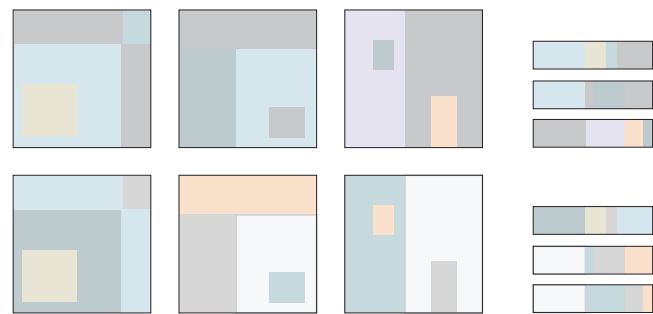
■ 용도별 적용지침 – 산업 및 기타 건축물 –

• 적용 시 참고사항

강조색은 권역별 대표색 및 콘셉트에 따라 자유롭게(개성있게) 적용 한다.

– 외장소재는 샌드위치 패널보다 친환경 자연소재를 권장한다.

– 제시하고 있는 색채 규정을 준수한다.

지붕색	■ 색 채 범 위 *YR, Y계열 명도 6이하/ 채도 4이하 *BG-PB계열 명도 6이하/ 채도 2이하 *N6이하  ■ 권 장 색 예 시 <table border="1"> <tbody> <tr> <td>2.5PB 2/3</td><td>10B 3/3</td></tr> <tr> <td>10YR 3/4</td><td>10B 5/3</td></tr> <tr> <td>10Y 4/4</td><td>7.5BG 2/3</td></tr> <tr> <td>5Y 3/2</td><td>N4.0</td></tr> <tr> <td>N5.0</td><td>N3.0</td></tr> </tbody> </table>	2.5PB 2/3	10B 3/3	10YR 3/4	10B 5/3	10Y 4/4	7.5BG 2/3	5Y 3/2	N4.0	N5.0	N3.0
2.5PB 2/3	10B 3/3										
10YR 3/4	10B 5/3										
10Y 4/4	7.5BG 2/3										
5Y 3/2	N4.0										
N5.0	N3.0										
벽체색	■ 색 채 범 위 R-PB계열 명도 4이상/ 채도 3이하, N4이상  ■ 권 장 색 예 시 <table border="1"> <tbody> <tr> <td>5B 9/1.5</td><td>10PB 9/2</td></tr> <tr> <td>10YR 9/2</td><td>5Y 9/1.5</td></tr> <tr> <td>10Y 9/1</td><td>2.5B 8.5/1.5</td></tr> <tr> <td>10BG 8/1</td><td>N8.0</td></tr> <tr> <td>N8.5</td><td>N9.5</td></tr> </tbody> </table>	5B 9/1.5	10PB 9/2	10YR 9/2	5Y 9/1.5	10Y 9/1	2.5B 8.5/1.5	10BG 8/1	N8.0	N8.5	N9.5
5B 9/1.5	10PB 9/2										
10YR 9/2	5Y 9/1.5										
10Y 9/1	2.5B 8.5/1.5										
10BG 8/1	N8.0										
N8.5	N9.5										
배색 예시											

4) 활용사례

■ 관리자 입장에서의 활용사례(예시)

- 대상 : 도/ 시/ 군/ 공사/ 공단의 실무자
- 활용 : 도면/ 계획 검토와 작업 지시용

• 적용 방법

– 해당 용도 체크

-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상업 및 업무 건축물
☐ 공공건축물 ☐ 기타용도 건축물

– 해당범위 내에서 지붕색 선정

지붕색	■ 색 채 범 위	■ 색 채 체 크
	YR, Y계열 명도 6이하/ 채도 4이하, 무채색	☒ 7.5YR 4/4

– 해당범위 내에서 벽체색 선정

벽체색	■ 색 채 범 위	■ 색 채 체 크
	전 색상계열, 무채색	☒ 5YR 8/3 ☒ 5Y 9/1.5 ☒ N8.0

– 해당권역 체크

- ☐ 북부권역 ☐ 서해안권역 ☐ 중부권역
☐ 백제유교문화권역 ☒ 남부권역

– 권역별 대표색채에서 강조색 선정

남부 권역	■ 쾌적함과 연속성이 고려된 안정된 환경색채 조성				
	5YR 8/1	10YR 9/1	2.5Y 6/2	5Y 5/4	10Y 7/2
	10YR 5/1	10YR 4/1	10YR 3/2	5YR 5/4	5Y 5/4

■ 사용자 입장에서 활용사례(예시)

- 대상 : 건축사무소, 엔지니어링 업체 등
- 활용 : 각종 계획 수립 및 도색 작업 시

• 적용 방법

– 해당 용도 체크

-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상업 및 업무 건축물
☐ 공공건축물 ☐ 기타용도 건축물

– 지붕 유무 체크

- ☐ 유 ☒ 무

벽채색

■ 색 채 범 위

*B-RP계열 명도 6이상/ 채도 4이하

*R-BG계열 명도 4이상/ 채도 4이하

*무채색

■ 권 장 색 예 시

7.5YR 8/1.5	7.5YR 8.5/2
10B 8/1	5YR 8/3
10Y 9/1	2.5Y 8.5/1.5
2.5PB 8/2	7.5Y 8/3
N8.0	N9.0

– 해당권역 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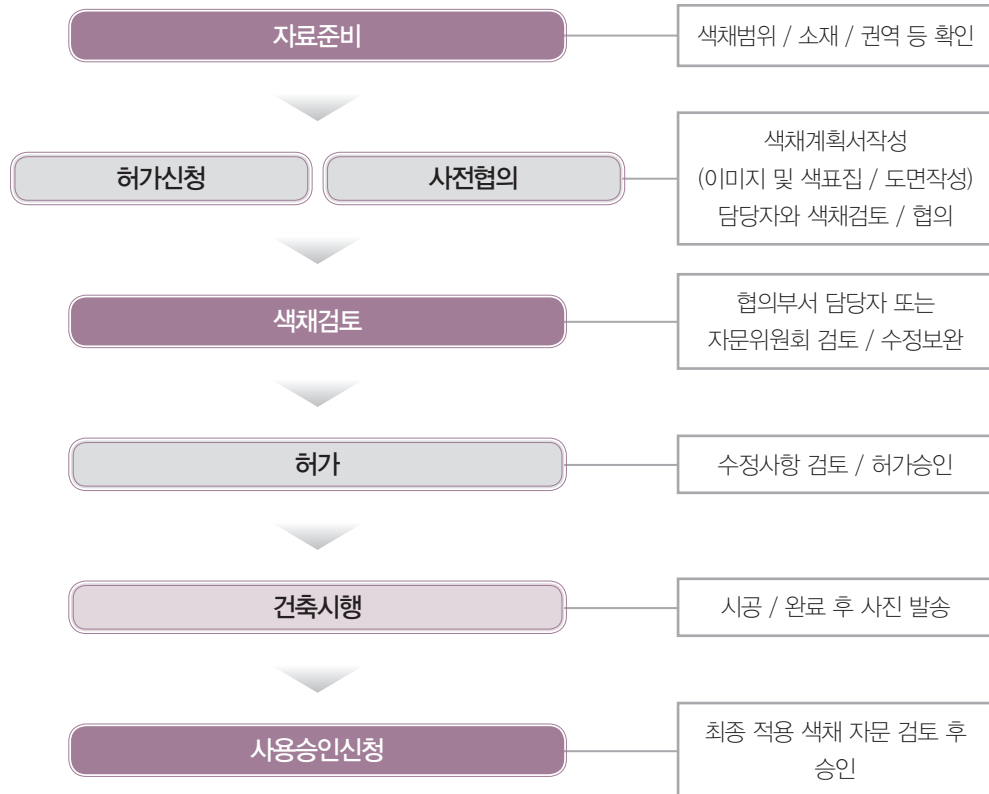
- ☐ 북부권역 ☐ 서해안권역 ☐ 중부권역
☐ 백제유교문화권역 ☒ 남부권역

– 권역별 대표색채에서 강조색 선정

남부 권역	■ 쾌적함과 연속성이 고려된 안정된 환경색채 조성				
	5YR 8/1	10YR 9/1	2.5Y 6/2	5Y 8/4	10Y 7/2
	10YR 5/1	10YR 4/1	10YR 3/2	5YR 5/4	5Y 5/4

5) 협의 프로세스

- 충청남도의 모든 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통하여 색채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체크리스트 항목을 점검하여 지역의 경관을 배려한 계획을 진행하도록 함(관련부서 협의시 점검)



3.2 색채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색채계획을 시행하고자 하는 민간 및 건축물 허가 주체인 공무원이 색채 지침 준수 여부를 자율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해줌으로써, 본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함

1) 체크리스트(공통)

구분	내 용	적합도 (+가 적합)				
		-2	-1	0	+1	+2
건축물	KS색표기법(먼셀색채계)으로 표기하였는가?					
	총남 권장색 및 상징색을 적용하였는가?					
	색채의 심리적 효과를 적용하였는가?					
	자연환경 및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색채를 적용하였는가?					
	퇴색이나 변색을 고려한 색채 및 소재가 적용되었는가?					
	지나친 고채도색의 사용으로 시각적 공해를 유발하지는 않는가?					
	유지 및 관리방안이 명기되어 있는가?					
	요소별, 소재별 계획이 적용되었는가?					
	주조/보조/강조색이 비율을 고려하여 색채를 적용하였는가?					
	인접 건축물 및 가로와 조화를 이루도록 적용하였는가?					
주변과의 조화	색채계획 도면에 색기호 및 색견본을 제시하고 있는가?					
	배색 코디네이션을 제공하고 요소별 색채적용이 표기되었는가?					
	자연녹화를 우선으로 적용하였는가?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를 적용하였는가?					

* 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색채계획을 실시한 후 감리 진행 필수

2) 체크리스트(관리자용)

■ 해당 용도 체크

-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상업 및 업무 건축물
☐ 공공건축물 ☐ 기타용도 건축물

■ 적용 방법

- ☐ 북부권역 ☐ 서해안권역 ☐ 중부권역
☐ 백제유교문화권역 ☐ 남부권역

지붕색	■ 색채범위	■ 색채체크	☐	
	*색상 :		☐	
	*명도 :		☐	
	*채도 :		☐	
			☐	
벽체색	■ 색채범위	■ 색채체크	☐	
	*색상 :		☐	
	*명도 :		☐	
	*채도 :		☐	
			☐	
강조색				

■ 범위 외의 색채의 경우, 권장색 제시

■ 색채범위(지붕)

- *색상 :
 *명도 :
 *채도 :

■ 색채범위(벽체)

- *색상 :
 *명도 :
 *채도 :

3) 체크리스트(사용자)

■ 해당 용도 체크

-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상업 및 업무 건축물
☐ 공공건축물 ☐ 기타용도 건축물

■ 지붕 유무 체크

- ☐ 유 ☐ 무

■ 적용 방법

- ☐ 북부권역 ☐ 서해안권역 ☐ 중부권역
☐ 백제유교문화권역 ☐ 남부권역

벽채색	■ 색채범위	■ 색채체크	☐	
	*색상 :		☐	
	*명도 :		☐	
	*채도 :		☐	
			☐	
지붕색	■ 색채범위	■ 색채체크	☐	
	*색상 :		☐	
	*명도 :		☐	
	*채도 :		☐	
			☐	
강조색				

3.3 충청남도 건축물 컬러칩

-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축물 색채 중 활용도가 높은 색채를 선정하여 실제 사용되어지는 색과 유사하게 컬러칩을 제시해줌으로써, 색채 활용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도록 함.

■ 컬러칩 사용방법

충청남도 표준컬러칩 구성

자연과 조화되고 지역의 역사문화를 반영한 경관조성을 위해 충청남도에서는 장기적으로 색채를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의 기본색채를 정리하였습니다. 표준컬러칩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물의 벽체색
2. 건축물의 지붕색
3. 건축물의 강조색

색상구성 및 배열

충청남도 표준 컬러칩은 충청남도에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건축물에 사용가능하도록 충청남도 지역색에 대한 조사결과로부터 얻어진 색을 국제표준으로 사용되는 먼셀 색채시스템을 적용하여 색상, 명도, 채도순으로 배열하여 일상에서의 편의성을 중시하였습니다.

먼셀번호의 표기는 색상, 명도, 채도로 나뉘어지며 아래와 같이 표기합니다.

▷ 색기호의 표기

7.5YR 2.5/7.5
색상 명도 채도



색표집의 사용방법

1. 건축물에 적용할 색채를 색표집에서 선정합니다. 소재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색표 하단에 있는 벽체색, 지붕색, 강조색을 확인하여 구분합니다. 면적이 넓은 곳에 채도가 높은 색의 사용을 피합니다.
 - 벽체에 권장되는 색채
 - ◎ 지붕에 권장되는 색채 (공장, 축사 포함)
 - 강조에 권장되는 색채 (문과 창틀, 사인 등)
2. 사용할 색을 육안으로 선정하고 하단 오른편에 있는 색번호 (먼셀번호)를 이용하여 정확한 색채를 확인합니다.
3. 색표집에 없는 다소 차이를 가진 색채의 사용도 가능합니다. (채도0.5, 명도1.0 차이 정도 가능)
4. 관리시에 색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직사광선을 피하고 유기용매류가 묻지 않도록 하십시오.

본 색견본은 충청남도에서 발간한 것으로 무단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 벽체색 ◎ 지붕색 ● 강조색

N01-05	N06-10	N11-15
N-01 ○ N 9.5	N-06 ○ 10R 9/1	N-11 ○ 5YR 8/1
N-02 ○ N 9.0	N-07 ○ ◎ 10R 6/2	N-12 ○ 6.25YR 8/2
N-03 ○ N 8.0	N-08 ○ 5YR 9/1	N-13 ○ 7.5YR 8/2
N-04 ◎ N 7.0	N-09 ○ 10YR 9/1	N-14 ○ 5YR 7/1
N-05 ◎ N 5.0	N-10 ○ 7.5YR 9/2	N-15 ○ 10YR 7/2

○ 벽체색 ◎ 지붕색 ● 강조색

N16-20	N21-25	N26-30
N-16 ○ 10YR 6/1	N-21 ◎ 10YR 4/1	N-26 ○ 10Y 9/1
N-17 ○ 8.75YR 6/2	N-22 ◎ 3.75YR 4/2	N-27 ○ 5Y 8/1
N-18 ○ ◎ 10YR 5/1	N-23 ◎ ● 2.5YR 4/6	N-28 ○ 2.5Y 8/2
N-19 ○ ◎ 2.5YR 5/2	N-24 ◎ ● 10YR 3/4	N-29 ○ 8.75Y 8/2
N-20 ◎ ● 5YR 5/4	N-25 ◎ 5YR 2/2	N-30 ○ 5Y 8/4

색채 가이드라인 활용매뉴얼

색채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충청남도 건축물 컬러칩

○ 벽체색 ◎ 지붕색 ● 강조색

N16-20	N21-25	N26-30
N-16 ○ 10YR 6/1	N-21 ◎ 10YR 4/1	N-26 ○ 10Y 9/1
N-17 ○ 8.75YR 6/2	N-22 ◎ 3.75YR 4/2	N-27 ○ 5Y 8/1
N-18 ○ ◎ 10YR 5/1	N-23 ◎ ● 2.5YR 4/6	N-28 ○ 2.5Y 8/2
N-19 ○ ◎ 2.5YR 5/2	N-24 ◎ ● 10YR 3/4	N-29 ○ 8.75Y 8/2
N-20 ◎ ● 5YR 5/4	N-25 ◎ 5YR 2/2	N-30 ○ 5Y 8/4

부록

충청남도 건축물 색채 가이드라인 대상 용도 분류
참고자료

부록

〈건축법 개정 2014.3.24.〉 근거

충청남도 건축물 색채 가이드라인 대상 용도 분류

〈단독주택〉

1. 단독주택 – 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1. 단독주택 – 나. 다중주택, 다. 다가구주택,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 –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기숙사

〈상업 및 업무건축물(근린)〉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 교습 및 무도 교습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인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공공건축물〉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산업 및 기타 건축물〉

5. 문화 및 집회시설

-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7. 판매시설

-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운수시설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 나. 철도시설
- 다. 공항시설
- 라. 항만시설
- 마. 삭제 <2009.7.16>

9. 의료시설

-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삭제 (2010.2.18)

마. 무도장, 무도학원

바.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 판매소 · 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 · 저장소 · 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 · 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 · 저장 · 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 · 판매소 · 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 · 양봉 · 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 · 식물원은 제외한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국방·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6.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참고 및 인용문헌

- 건설교통부, 2005 도시계획현황, 2006
- 공주시, 2020 공주시 경관기본계획, 2014
- 논산시, 2020 논산시 도시기본계획, 2012
- 농어촌 경관이미지 형성을 위한 환경색채 적용모델, 농림수산식품부, 2010
- 당진시, 당진시 기본경관계획, 2012
- 보령시, 2020 보령시 도시경관기본계획, 2011
- 아산시, 아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 2007
- 천안시, 천안시 기본경관계획, 2010
-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2009
- 충청남도, 2020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2013
- www.cheongyang.go.kr
- www.geumsan.go.kr
- www.gyeryong.go.kr
- www.gongju.go.kr
- www.hongseong.go.kr
- www.yesan.go.kr
- www.seosan.go.kr

발행기관 및 연구진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이현우 건설교통국 국장

김창현 건축도시과 과장

이흥규 건축도시과 과장 (전)

윤 일 공공디자인팀 팀장 (전)

엄병용 공공디자인팀 주무관

이정호 공공디자인팀 주무관

박정규 공공디자인팀 주무관

윤정상 공공디자인팀 주무관 (전)

권계희 공공디자인팀 주무관 (전)

연구책임

박혜은 전임연구원

연구진

이충훈 선임연구위원

방재성 책임연구원

오병찬 책임연구원

김철명 연구원

공동연구진

김장석 교수 (한밭대학교 공업디자인학과)

진은미 겸임교수 (한밭대학교 공업디자인학과)

자문위원

김종서 교수(공주대학교 조형디자인학부)

남택영 교수(대덕대학교 패션리빙디자인과)

류철호 교수(건양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박연선 교수(홍익대학교 디자인영상학부)

이병훈 교수(한남대학교 디자인학과)

이석현 교수(중앙대학교 디자인학부)

인쇄발행 2015년 5월

발 행 처 충청남도

연구기관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인 쇄 처 세기인쇄

- 본 보고서의 판권소유는 충청남도와 충남연구원에 있음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서면동의가 없이는 복제나 전제가 불가능함